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會議錄

(第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3
2.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
3.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0
4. 부 록	
가) 의사일정(안).....	39
나) 1992년도 주요업무계획.....	41
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61
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65
마) 서면질문요지서 및 답변서.....	113

제 7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 회 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1월 29일 (수요일) 11시 00분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의장)
6. 교육감 인사(신임공무원 인사소개)
7. 폐 식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1시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묵 념

(녹음 주악)

.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정인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7회 본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인은 먼저 교육동지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육가족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언제나 큰 행운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내 고장 충북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민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왔습니다.

중요한 교육조례의 제정을 비롯하여 조사·감사활동 및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모범적인 민선 교육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교육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바람직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이제 우리는 교육자치의 제2차년도를 맞이하여 교육자치제도를 더욱 소망스럽게 발전시키고 도민의 교육의사를 존중하며, 내

고장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맡은바 그 소임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내 고장의 교육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제도적 보완과 그 개선을 시급히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집행 담당자들도 종래의 관료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일선 교단지원체제의 확립에 보다 더 애써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들 교육가족도 사회의 각계각층과 보다 폭넓은 교감대를 이룩하고 교육공동체를 확대하여 구성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교육청에서도 소관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되 모든 일은 해당 시·군 교육위원들과 합심 협력하시어 우리의 자녀교육을 보다 새롭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충북교육의 도약을 구축하고 그 선진화를 열정을 모아 도모해야겠습니다.

입시교육의 병폐와 고교평준화의 문제, 교육환경의 개선, 수월성 교육과 특성화 학교의 운영문제, 교수 학습방법의 연찬, 교육행정의 민주적 개선 등 심각한 당면 과제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본질을 가꾸어가고 교육자치제도를

소망스럽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내 고장 교육발전의 주체적 입장에 서고 충북 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총체적 노력을 모아 주시도록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다음은 교육감 인사 말씀과 신입공무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정인영 : 그동안에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박동기 장학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장으로 있다가 승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연구원장 최철수 연구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천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승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학생회관장 이종록서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천에 있는 충북학생야영장장으로 있다가 영전이 되었습니다.

'92년 돼서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설날이 됩니다.

미리 새해 인사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더욱 건승하시고 덕내에 다행다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초순에 시·군마다 다니면서 우리 교육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을 때, 여러 교육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환영도 해주시고, 그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개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난 '91년도에는 9월달에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4개월 밖에는 되지를 앓았습니다.

그동안에 여섯번의 교육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닉달이라고는 합니다마는 회의는 20일 밖에 되지를 앓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잘 해주셔서 그 동안에 '91년도의 추경예산안을 두번이나 변경을 해서 결정을 해주셨고, 또 '92년도의 본예산도 심의를 하셔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이 참으로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섬

진적인 심의를 해서 의결 해주신 것, 이 자리에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의 개정 2건, 또 새로 제정된 것 5건을 의결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을 살펴 보고서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이나 일선학교에서 보다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조례안을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 모든 교육가족도 상당히 고무되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감사를 5일만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구석구석까지도 잘 살펴서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취득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관리 관계 이와 같은 것들도 심도있게 잘 심의를 해주셔서 일선학교 교육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훌륭한, 빛나는,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업적을 남겨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2월 4일에는 본인이 교육감으로 선출 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정도 해주신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92년도를 맞이해서 교육시책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에 교육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인화 중심의 교육 행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교육시책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정착되는데, 학력의 향상이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과제다' 이렇게 명심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정한 뜻의 학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하에서 보다 더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살려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이나 교육제도의 개선에 노력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보다 '92년도의 중요한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박동기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들께 발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이상으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회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15분 폐식)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1월 29일 (수요일) 11시 15분

의 사 일 정(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의안상정
 -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나.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회기결정의 건
3.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부교육감)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권혁풍위원의 3인 발의)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5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16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정기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의안중에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의 3건은 지난해 11월 25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13일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제6회 임시회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92년 1월 10일 공포되었고,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조례는 12월 26일 도의회에서 관장직급을 수정의결하여 금년 1월 1일 공포 되었으며,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1일 도의회에서 도서관 건물유지비 천만원, 학교운영비 7천5백만원, 교재교구 구입비 4천9백만원, 계 1억3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작년 12월 30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내용입니다.

12월 17일 국회의결과 12월 31일 공포 절차를 걸친 개정법률 주요내용은 회의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늘리고, 그리고 의결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의사당관을 의사국장으로 변경하여 직제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의 출석

시에 여비지급의 길을 터 놓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소집 배경을 보고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과 '92년도 주요시책을 보고하기 위하여 1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1호로 제7회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혁풍위원의 3분위원님의 발의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권혁풍위원께서 1월 21일 '92년도 폐교학교 현황과 향후 연차별 폐교대상학교의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대비책 등 10개항에 걸친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서가 제출되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이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월 28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송부되어 권위원님께 이송해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9분)

2.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리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제 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1월 29일과 30일, 2일간으로 하여 권혁풍위원의 3인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992년 1월 29일, 30일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3.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감을 대리해서 박동기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 우선 보고드리기 앞서서 의사일정 중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소개 말씀을 드렸다고 피 저는 작년 구랍 20일자로 본도 교육청 부교육감의 직책으로 소임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이지마는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서도 부임초에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무성의하게 이렇게 회기중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더 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신껏, 능력껏 집행기관의 부책임자로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세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지향점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199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여러 위원님들께 집행기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교육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작년도 정기회때 교육감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부교육감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을 듣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기관의 업무를 파악 하시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교육감의 업무보고중 특별히 궁금해 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꼭 알아보셔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된 내용 범위안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권혁풍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권혁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계획 수립 전반에 걸쳐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인사 말씀이 계실때, 모든 교육행정을 학교장 중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본으로 해서 현장의 창조성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계획 수립도 역시 그러한 식으로 하신 건가, 즉 학교에 현장의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그것을 수립해서 과연 이 도교육계획이 수립 되신 건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현장에서 창조성을 살려서 함으로써 현장에 실천 가능한 산 계획

그야말로 허구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산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것이 학년도 말에 가서 어떻게 결과가 분석이 되는가, 혹은 중간평가 같은 것이 있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달성이 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지금 그 행정방향과 계획을 여덟가지를 들고 계신데 거기 보면 각 과별 실천계획이 뒷편에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신 교육계획에 보면 부록이 붙어있는데 그 부록과 관련을 짓는 것이 어떻게 하는 그런 저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문적 영역을 제가 괜히 침범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각 과의 업무추진 내용을 그 행정시책 기본방향, 혹은 그 계획과 일원화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결과분석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19번에 과학수학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페이지 40에 과학기술과와 연계를 해서 그 넘버를 매긴다던가 관련을 시켜주신다며는 그 평가·분석하는 데도 좋고

혹은 실천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계획 전반에 걸친 질문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교육계획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내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92년도 폐교 및 향후 연차별 폐교 대상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계획 관련 7번에 관계가 됩니다.

교육환경의 쇄신, 여기에 관련이 된다고 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일선교사의 나사풀린 풍조, 이것이 요즘 유행병처럼 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풍조인지, 쉽게 말해서 소신이 없는 풍조라고 할까, 혹은 그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아노미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근본원인이 뭔가 있을 텐데, 그 원인 중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적인 환경, 혹은 행정관리체제에 있어서의 비리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이 납니다.

그래서 근본원인이 뭔가를 찾아 주시고, 해결책이 뭔가.....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요즘에 여중·고생의 가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중·고생 가출현황과 그 원인 및 대책, 이것은 학생문화의 형성 5번과 관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입니다.

도·시군 및 학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중·고생 진로교육의 현황 관련 5번의 학생문화의 형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생 진로교육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일선교사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교원 인사이동이 좀더 빠르게 나서 종업식 전에 좀 할 수 있는가, 물론 증상으로 부터 여러가지 저해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정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도 역시 7번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관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회관이 서 있는데, 학생회관이 여
기 역시 학생문화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의 운영방향은 어떤 것인
가 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관계관계서는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분야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김근락 : 예, 관리국장 김
근락입니다.

권혁풍위원장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폐교
학교 현황 및 향후 연차별 폐교대상교와 그
대비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92년도 폐교 현황은 이미 서면으로 답변
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
며는 증원에 있는 북성국민학교의 20개 교
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이미 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영동에 있는 상촌국
민학교 삼봉분교장의 7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이미 저희들이 보내 드
렸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영동국민학교 화신분
교장의 4개교가 폐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
는데 이것도 이미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
해드렸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폐지학교에 관한 활용 계획이라고
하는 대비책은 저희들이 학생야영장이나,
또 수련장, 교직원 휴양소 등으로 교육목적
과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이것도 불용이한 곳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
도록 이렇게 지역사회와 협조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 폐교 학교는 당초에 학교가 설
립될 당시에 지역사회 유지나, 뜻있는 분들
이 협찬을 해서 기증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재까지는 민간에게 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재가 위에서 말
씀드린 대로 활용이 안되는 폐교에 대해서
는 매각해서 교육계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방침
에 의해서 매각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던지 해서 교육목적에 지향토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 권혁풍위원장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폐교 현황 및 연차별 폐교 대상교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중등교육국 소관은 없어요?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철 : 초등교육국장 홍영철입니다.

먼저 인사발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3월 1일 개학 대비 인사발령을 미리 하는데 교장, 장학관의 중앙발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교사발령도 동시에 발령내는 사례로 해서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발령은 종업식이 2월 22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인사도 있고 해서 2월 20일날 인사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중앙발령이 그때까지 다 나면 일시에 하고, 중앙발령이 나지 않을 경우는 교감, 교사 발령은 2월 20일자로 발령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일날 발령을 하려는 교육청에서 바로 작업을 해서 22일날 종업식에는 그 학교를 떠나시는 선생님들이 전교생 앞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일선교사의 무소신 풍조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그것은 비단 교육계 뿐만 아니고, 하나의

사회풍조가 그런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학교 선생님도 다소 소신이 없고 적극적인, 진취적인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일부 선생님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그 원인을 보려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의 영향을 받은 선생님들이 하나의 그 공직자로서 사명의식에서 어느 정도는 개인주의적인,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이런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학교 근무여건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봉급자에 비해서 교원들은 오지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들은 대개는 도시에 산재되어 있지만 학교는 산간벽지에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대적인 근무여건 환경의 열악성에 영향을 다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92학년도부터 인화중심의 교육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다소 무소신하고, 개인주의적인 것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신적인 측면의 기강확립 문제입니다.

이것을 세가지로 나눠서 연수, 또 대화,

또 하나는 참여,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수활동은 신규교사를 작년까지는 단계교육원에서 2박3일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9박10일동안 연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양과 정신적인 교육이 곁들여지게 됩니다.

또 각종 연수회 때마다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문제입니다.

저희 도단위 입장에서는 먼저 연말에 국장들이 중심이 돼서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서 거기 현장의 문제점이 뭐고, 어려운 점이 뭔가 하는 것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회신을 일선학교로 해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년도 인사들 겸한 교육감님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교육감님이 직접나가셔서 일선의 어려운점, 또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문제 등등 대화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교육풍토 쇄신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참여 문제입니다.

민주화로 가는 길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개행정이고, 두번째는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고, 교육행사를 할 때마다 관계되는 모든 선생님뿐만 아니고 지역인사까지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집약, 집행하므로 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소신을 갖고 자기 업무에 성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시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무기기의 현대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잡다한 일을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일반, 도와주는 선생님도 이용을 하고, 또는 기계를 현대화 해서 업무시간을 줄이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좀 보충질문 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까마는 그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행정관리체제가 어떤 그 약간의 비리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일선 교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거부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 조등고목국장 표영철 : 비리적인 문제.....

○ 권혁풍 위원 : 어떤 것이 혹시 그런 요인은 없었던가.....

○ 조등교육국장 표명장 : 지금 다소 선생님들이 품위 손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상필벌 주의로 했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예를 들며는 도박을 했다, 이런 것은 예외 없이 전부 징계에 회부해서 인사조치를 했고, 기타 이성 문제, 품위 손상하는 문제는 그 정상에 따라서 전보조치,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관리나 이런 것을 잘 못해서 화제를 냈다, 이런 때에도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간 행정관리체제가 혹시라도 교장, 교감이라든가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비리가 혹시라도 있을 때, 그 때는 일선교사들이 상당히 그 아노미현상이라고 할까, 그 기준이 없는 그런 현상, 질서 없다, 뭐 위에서부터 잘못하니까 우리도 적당히 하자 하는 이러한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조등교육국장 표명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연말연시 전후해서 공직자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비리문

제 적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음은 중등교육국 설명하세요.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여중·고생의 가출현황과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출현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중학생은 40명, 고등학생은 35명 해서, 총 75명이 가출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며는 첫째가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일방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강박감, 또 한가지는 결혼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 되어 있고, 또 불량 교우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가출을 하는 그런 동기, 또 사춘기의 정서불안, 이런 등등이 가출의 원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해 나갈 방향은 중·고등학교에 바른 가치관을 평상시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되겠다.

즉, 인간교육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로상담실을 지금 현재에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더 그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스로가 찾아 와서 자기의 고민, 또는 애로 사항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화 광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실 운영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직접 대화를 통한 가정교육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생보호를 위한 등·하교 지도에 대한 강화가 또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바른 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경우에 아마 조금이라도 가출 학생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책까지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전기대학에 저희들 도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쳐서 전기대학에 합격한 학생수는 4천357명이 합격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지역별로 봤을 적에 충청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2천127명, 충남지구 531명, 서울 510명, 기타 382명해서 3천550명은 재학생입니다.

금년에 졸업예정자이지요.

그 다음에 졸업생, 재수생이지요 말하자면은 졸업생들은 충북 339명, 충남 89명, 서울 306명, 기타 73명 해서 807명의 재수생들이 전기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각 학교별로 말씀을 올리며는 충북대학 천918명, 청주대학 421명, 교원대 35명, 교육대 91명, 서울대 121명, 연대 74명, 고대 82명, 이대 37명, 숙대 14명 해서 주요 꼽고 있는 그런 대학은 2천793명이 합격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기대학이 있고 앞으로, 또 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진학상황은 또 추후에 설명 말씀을 드리고, 실업계고교의 취업현황 이것을 또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계열, 금년도에 98.31% 그러니까 천371명 졸업생중에서 1천169명이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업계는 2천852명중에서 희망자가 2천273명인데 100% 다 취업이 확정이 됐고요, 상업계열은 4천800명 졸업생중에서 4천453명이 희망을 해서 3천367명이 확정되어서 86.84%, 즉 농·공·상을 합치며는 9천23명중 7천915명이 취업을 희망을 했고, 거기에 확정된 것이 7천309명이 확정되어서 저희들 도에 취업률은 토달 92.4%정도가 현재까지로써 확정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취업이 돼야만 하는데 현재 저희들 산업구조상의 실태로 봤을 적에는 상고학생들 전원이 회계분야, 무역분야, 또는 상업분야, 마케팅이나, 이런 유통과정 분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취업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는 과연 저희들 산업의 구조형태로 봤을 적에 그만큼 졸업생수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구조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일부학생들, 또 능력,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역시 공업계나 농업계도 같은 현상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계도 원래가 농고를 졸업받은 학생들은 자영, 자기가 농사를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분야 계몽에 취업이 돼서 나가야 합니다. 마는, 그렇지 못할 실정이고 해서 농고 출신들도 아마 생산직으로 흡수되는 그런 경향도 많다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공업계도 역시 자기가 전기과나 기계과, 전자과, 이런 분야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취업이 확정이 돼서 나가는 학생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산업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 단순 기능공으로써 취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회관에 대한 앞

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도 나와있습니다. 마는, 첫째가 청소년 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생회관이 5층,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시실, 음악감상실, 강당, 연극장, 또는 분과 토의할 수 있는 분임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에는 교육연구원이 임시 그 4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드린 것과 같이 서기관님이 책임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선거가 끝나는 3월 말일경, 아니면 4월초에 학생회관의 개관식을 한마당놀이잔치로써 개관식을 갖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중 그 학생회관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자기 분야에 맞는 클럽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으로써 활용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장님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 관장님과 협의를 해서 보다 좀 나은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아까운 것은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청주, 청원군 학생들이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당에서 무용에서부터 또는 운동, 스포츠죠, 그리고 독창, 이중창, 독무, 군무 등등 또는 미술작품, 조각작품 이런 것을 항시 전시장에는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는 무슨 강연회, 또는 연수회 등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 체제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권혁중 위원 : 예, 제가 또 보충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로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많이 됩니다마는,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이 되는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도 연구원에 한영환 연구사가 조사 발표하신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보니까 인문사회계열에 39.8%가 적성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적성을.

자연계열에 44.4%가 자기 적성이 뭔지, 자기 소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75% 이상이 성적만 허용이 되면 대

학을 가겠다, 성적이 안돼서 그렇지 성적만 허용이 되려는 대학을 가겠다 하는 조사가 됐고, 그럼 대학을 왜 가느냐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60%가 직업을 찾아 간다 즉, 자기가 희망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그런데 대학을 나온 학생에 40%만이 취직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자기 소질을 고등학교 때도 잘 모르겠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이 좀더 철저히 되어서 자기 적성을 빨리 알고 소질을 알아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고, 대학도 역시 가는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증등교육국장 나세웅 :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말씀을 드려야.....

○ 권혁중 위원 : 예.

○ 증등교육국장 나세웅 :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중·고등학교에 교육의 변혁을 가져 와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템포가 느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까지는 자유롭게, 학교에서도 정과수업만 열심히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고, 또 학생들도 예습과 복습, 보충지

도라는 말이 요근래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자율학습이라는 말 이것이 옛날에는 예습과 복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정에 돌아가서 내일 배울 것을 예습하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지를 못합니다.

새벽서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끌고 있고, 이런 실태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요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첫째가, 청주시내에 평준화를 과연 이대로 지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학원을 현재 상태로 1년에 5개월만 개방을 하고, 그리고 개방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초 조사와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내에 아마 조사가 완료되고, 검토되고, 자문도 많이 받아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활동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자기의 적성에 맞는, 자기 취미 활동에 맞는 그런 분야로 뭔가 기능이, 기술을 한가지씩 익히고 그런 분야에서

정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가출 문제라든지 또는 청소년의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자연봉사 활동, 또는 학부모교실 운영, 노인교실 운영, 특별활동의 활성화, 또는 학생회관의 건립문제, 야영장 설치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또는 5단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등등 이런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친구도 사귀고, 또 자기의 의견 발표도 배우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균형된 인간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려는 아마 멀지 않아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추상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문에도 조금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청주시내 인문계고등학교가 역류 현상이 나왔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지망한 학생중 그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한 75명이 합격이 났습니다.

그러면 합격권내에 일전에 미등록자까지 생겨서 커트라인이 애당초는 107점입니다, 남자가.

그리고 미등록자 열명이 생겨서 그 학생들을 채우다 보니까 10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2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105점을 받은 학생들이 3년동안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4년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으나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은 147점이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160점 이상이 커트라인이 돼야 그 학생들이 전문대,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일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남학생들은 170점 이상을 봅니다.

그런데 107점에서부터 150점까지 그 사이에는 970명이 있습니다, 약 1,000명.

그러니까 3,200명중에 1/3은 도저히 발버등을 친다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성장과정에 따라서 어렸을 적에는 지능이 둔하다가 성장됨에 따라서 고학년으로 감으로써 지능이 개발되는 그런 학생도 간혹가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우가, 대부분이 저희들 청주시내 남자고등학교에 1,000명은 정말로 둘러리 성격이다, 이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내년도에는 인위적이거나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수를 좀 줄여서 그래도 150점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권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미흡하지 않습니까?

○ 권혁중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소관 속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더 구체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있다며는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해서 위원 1/3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과 교육시책 등을 질의·답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발의를 해주시는게 절차인 것 같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하고, 한 두 분 일것 같으면 그냥 지속을 하겠습니다.

하실 분 더.....

(김광수,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김광수 부의장도 있으시죠?

김응복위원, 또.....

(권혁중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중 위원 : 제가 질문 한것 중 답변이 다 안된 것이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안된게 있습니까?

예, 보충요구 하세요.

○ 권혁중 위원 : 다른 질문이 아니고 아까 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에는 도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교

육청에서 또 지침을 내려가지고 현장 학교에서 이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올려 제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되면서도 역시 똑같은 그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가, 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만 하거나 그냥 그것이 확정되는가, 주민에 참여 방법은 없는가.

뵈, 이런걸 여러가지 묻겠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을 못해서 소상하게 여러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교육계획 수립,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 수립은 어디까지나 기저를 헌법이나 교육법이나 또는 교육과정이나 또는 국가시책이나 또는 교육부시책이나 더 밑에 내려오며는 각 시·도에 교육감의 의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지역에 교육자들의 의견,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전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계획

을 수립을 한 것을 심사 분석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목표의 덕목이 물론 학교에 따라서 또는 시·군교육청에 따라서 다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그 특성 덕목도 좀 가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도 주요교육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립된 교육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아까 권위원님께서 중간평가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평가는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간 4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군 장학진들이나 도 장학진들의 장학보고회가 있고, 또 장학지도를 한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현황 전반에 관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가지고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에 그 시·군이나 학교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부교육감이나 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시·군을 심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간접적인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 연중 평가, 중간 평가가 다 이루어 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적인 운영 내용을 소상히 제가 인지를 해서 여러위원님들에 핵심적인 질문에 핵심적인 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이 됐습니까?

○ 권덕홍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김응복위원 질의하시죠

○ 김응복 위원 :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참 머리도 짜고, 여러가지 증지를 모아서 했기 때문에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교육계획중에 15페이지 국제화 교육의 확충에 가장 적절하게 국제 이해교육의 강화에 요즘 대두되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와 아주 그 포인트가 맞아 떨어져서 제가 당부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문화에 대한 주체적 이해, 주체적이란 말에 강조를 두어서 이해하고 수용해야겠다, 참 절실한 말씀이죠.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며는 국민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전부 일본문화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국민학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전부, 국민학교 아이들이 쓰는 학용품 거의가 알게 모르게 전부 일체입니다.

특히, 만화에 대해서는 이 피해가 보통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서부터 잠식하고 기성세대까지도 말하자면 아주 둔화 돼서 지금 동질화 되어가고, 동질화 되어가.

나이먹은 저희들 적에 대해서는 아주 분개심이 참 기막힙니다, 이거.

요즘에 선생님들 왜정때 심각한 것을 겪지 못해서 그런지 목적의식이 아주 약해요.

외래문화를 수용한다, 뭐 미국의 영화, 폭력 영화,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이 매일 방영되고 하니 막을 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정신대 문제가지고 얼마나 들썩이고 있습니까?

이거 감각 없어요, 지금.

나이 젊은 선생님들 여기에 대한, 정신대에 대한 분개심도 없고, 무역적자 100억불을 거기다가 침식당해도 하등의 걱정도 안해요, 지금.

이런 판에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하도 분개가 되고 그래서 주체적 이해와 동시에 수용은, 교육에 대해서 일선 나이 젊은 선

생님들이 그러한 역사의식을 아주 심각히 가지고 요즘에 국민학교 아이들, 서울서 온 애가 방학에 올 것 같으면, 무의식중에 그 집 어른이 외제품을 썼다가 아이들한테 지적을 당했어요.

학교에선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데 왜 쓰니까?' 이런 식에 따끔하게, 그 부모되는 사람이 당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적에 참말로 선생님들이 교육자적인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다면 뭔가 물론 교육 효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부모님들 어릴때 얘기 한 것 그때는 몰랐죠.

교육이 됩니까?

결국 나이 먹을수록 잠재의식이 자꾸 되살아 나서 이것이 인격화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러한 적절한 교육개혁을 세운데 대해서 요즘에 그 일본 사람들의 여러가지, 말하자면 반성아닌 반성이라든가. 가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 국민학교 어린이들, 중학교 전부가 잠식당해 있다는 심각성을 좀 알으셔서 물론 그 젊은 어머니들의 교육이 꽤먹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요즘에 한평생을 교육으로 지냈다는 시아버지가 대학 갔 나온 한 30대 며느리를 다루지 못해요.

교육에 관여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쿠, 그거 예전 얘기에요, 다."

"지금은 그러면 안돼요."

지금은 이 지경입니다, 이게.

그러니 당부겸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은, 참말로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가 일선에 사뭇 살아 보면 계획은 계획이고, 일반 교육전개는 전개대로 이걸 별개라 이거요, 이게 큰 일어요, 물론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요.

특히 이런 면에서 좀 젊은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참말로 의식 가지고, 이제는 일본은 우리에게 백억을 무역적자내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그것은 도리 없지 않느냐, 하는 식에 특히 정신대 같은 이런 문제는 어린이들 젊은 선생님들은 몰라요.

이런 심각성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어머니 교육이나, 여러가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답변은 안해도 되죠?

○ 김응복 위원 : 예, 안해도 됩니다.

○ 의장 김영세 :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이재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제가 지역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번에는 17페이지에 공개행정의 실현에 인사문제, 특히 일선 교장선생님들 주문이 이제 학기초에 학급 배정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서 증치교사의 활용이 큰 문제로 돼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도 증치교사에 대한 우대책이 뭐냐고 들었을 때는 무슨 표창을 우선적으로 해준단든지, 해외연수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는 지금 증치교사중에 표창 받은 사람이 몇 프로이고, 외국에간 사람이 몇 프로냐, 이렇게 되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시다.

그래서 주문이 증치교사에 대한 우대책이 어떤 규칙으로 좀 마련해 주면은 희망자도 많을 것이고, 이 학기초에 인화단결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주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증치교사 우대책.

그 다음에는 7번, 교육환경의 쇄신에 급식학교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이 '80년대에는 결식아동 방지라든지, 또는 국민채워 향상 목적으로 이 급식을 실시를 했고, 요즘에는 급식의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복지차원으로 바뀌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적인 애깁니다마는 재천 관내 몇 군데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재천의 입석국민학교 같은 데는 그 식당이 웬만한 큰 그룹의 식당 못지 않게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천의 흥광국민학교는 급식을 시작한지 한 10년이 되는데 아직 식당이 없습니다.

천3백명 학생들이 학급별로 밥떠가는 통, 국떠가는 통, 이게 아주 무질서 해가지고, 제가 재천교육청 관리과에 이게 시정책이 뭐냐, 이 재천교육청에서는 예산때문에 아주 엄두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 사체과 실무진에게 물어 봤더니, 금년도에도 12개 신설 계획이 있는데 한 학교당 3,000만원 예산가지고 급식시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흥광국교 1천명이 먹는 식당을 짓자면은 적어도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원한 얘기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지금 실무진에서는 해결책이 안나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홍영창입니다. 이 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문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급 담임배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이 20개 학급인데 선생님들 희망은 대개 제가 보기에는 도시는 저학년 희망을 합니다.

고학년을 안하려고 하죠.

남자분들은 또 고학년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 수요와 공급문제죠.

선생님들 개개인에 희망을 다 들을 수 있는 충족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희망과 학교의 실정을 감안해서 의사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희망을 했는데도 안해주니까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해서 그것을 외부로 노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1학년을 많이 희망을 한다라고 하시는 증복해서 담임하는 것

을 피하는 방법,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증치교사 우대책 문제인데, 현재 도내에 증치교사가 국민학교에 16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증치교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학급 담임외에 164명이죠.

대개 교무주임, 연구주임, 이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활용된게 아니고 전임을 하면서 하나의 사무취급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되겠다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증치된 선생님이 교과를 일부 담당하므로 해서 전체적인 선생님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또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예·체능 전담제 확산입니다.

그런데 이 교무주임하고, 연구주임하면 이 사람들은 뭐하느냐, 사무를 보다가 학급에 한 사람이 병가를 냈다든지, 출장을 갔다 이러면 그 반에 보결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리하는 데에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교과전담으로 돌려서 실제로 교과지도를 하도록 하니까 담임을 맡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증치가 돼서 일부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만 맡고 있으니까 소속감도 적고,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봐서, 주요 교과, 기능교과는 국민학교도 앞으로 전담 담임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에서 전체가 다 그런 교과를 맡는 분이 많으려는 말이 없는데 증치교사 164명이 시·군에 흩어져서 한 시·군에 6명 정도 있죠.

이 분이 학급 담임을 안하고 그대로 음악이나, 미술, 체육을 맡으니까 우대를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대를 어떻게 하느냐, 164명을 일시에 다 표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시에 다 해외연수를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중에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한 분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순번이 늦어지니까 뒤에 순번이 안달은 분이 또 왜 표창을 안해 주느냐, 해외연수 안 보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현대인은 기다리고, 참고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예·체능 교과 전담하고 있는 증치 선생님들에 대한 우대의 방안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모두가 다 충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은 어려운게 아닌가, 점진적으로 충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금식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나세용 :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이 답변은 어려운 답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96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금식학교를 전부 100% 다 완성을 하겠다 하는 목표에서 지금 저희들 도에 금년도에 배정된 것도 12개교를 우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수 전원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시설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

왜 그러나 하려는 교육부에서도 '96년도까지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 다 확대를 시킨다 할 적에는 아마 풍족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금식학교다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밖에는 현실적으로 올릴 수가 없겠네요.

만족한 답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 이재희 위원 : 국장님은 그러시면 그 흥광국교를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학생수가 한 천3백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식당은 맨 뒤에 있고, 후관 앞에 본관 그런데 식당에서 본관 2층 맨 구석까지 밥을 나르자면 한 300미터 나르는데 5, 6학년들은 자기네가 들고 가고, 저학년들은 학부형이 동원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인력난이라든지, 이 학교 급식도 하나의 식사지도인데 지도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부교육감님, 이 어떤 특별대책으로 한 100평짜리 하나 좀 지어 주실수 없는가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제희위원 답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이재희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또 질의가 있으시면 잠깐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없으시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속히하죠.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1호 의안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의 개정 에 따라서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 등의 절차는 2차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별첨)

(12시 38분)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2호 의안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설명은 좀 시간을 요하므로 지금 시간

이 오래되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12시 48분)

○ 의장 김영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학교신설, 소규모학교 병·폐합으로 인한 본교 폐지, 본교장 격하, 본교장 폐지, 행정구역 변경, 학과 개편 등으로 인한 충청북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이미 계획에 의하여 행정처리등 관계 절차가 마쳐진 것이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한 조례심사 소위원회의 구성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들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의 구성은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8분)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이제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함에 앞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응복, 박병해 두 분 위원님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응복, 박병해 두 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속기관 방문계획에 의거하여 오후
에 단재교육원과 과학교육원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찬 후에 이동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새,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20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
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
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교육연구원장 최철수, 충청북도학생회관장
이종록.

○ 의사일정(안) : 별첨 1.

○ 1992년도 주요업무계획 : 별첨2.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3.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4.

○ 서면질문요지서 및 답변서 : 별첨5.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 1월 30일(목요일) 10시00분

의 사 일 정(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의안 의결

-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해위원외 3인 발의) 상정 및 의결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어제 박병해위원님의 세분 위원님 발의로 본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위하여 차기 임시회 회기중에 관계공무

원 출석 요구가 되어서 이를 먼저 상정하여 의결하신 후에,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신 후에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폐회 후에 직속기관인 증양도서관 방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
다마는, 박병해위원님 외 3인으로부터 교육
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
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
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병해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월중
에 예정된 제8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시
에 교육감, 부교육감과 각 국장 및 각 과장
을 출석시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전반
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
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건 충청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과 관련, 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미리 의사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1호 의안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
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질의 없으세요?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부의장 김광수 : 여비 산정하는 방법
은 거리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
지 않을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좀.....

○ 의사국장 민병수 : 제가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규정에 보려는 이 위원회 사무실 소
재지와 소재지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재지에 대해서는 출장시에 숙박비나,
식비가 없고, 현지교통비라고해서 그것만을
드리게 돼있고, 이 소재지가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숙박비라든지, 현
지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걸 지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

다.

○ 부의장 김광수 : 그 규정은 어떤 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 의사국장 민병수 : 그 규정은 국가에서 만든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가공무원의 규정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도의회, 지방의회 하고, 우리들하고의 균형이 어떻게 같이 되어 있어요?

○ 의사국장 민병수 : 똑같습니다.

이번 만들어진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제 24조에 보려는 과거에 저희들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넣었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규정 그것을 준용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사수 위원 : 예, 지금 내용이 어떤요?

그 위원님들 궁금도 하시고 할텐데, 교통비 얼마주고, 숙박비는 얼마주나 그 내역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 의사국장 민병수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현지 교통비라고 해서 그 것은 출장지에 가서 시내를 다니는 현지 교통비입니다.

이것이 4,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가 특지는 16,000원, 갑지는 15,000원, 을지는 13,500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주는 갑지에 해당이 됩니다.

특지는 서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비는 특지가 10,500원, 갑지가 10,000원, 을지가 9,000원을 되어 있는데 청주는 갑지 10,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소재지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이라고 해서 또 별표가 다시 나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러면 여기와서 하루 회의를 할적에 하루 청주 와서 자고, 이럴 때는 위원님 한 분에 어느 정도의 여비가 지급 됩니까?

○ 의사국장 민병수 : 청주에서 주무시는 걸로 본다면, 숙박비 15,000원하고 식비 10,000원하고 25,000원에다 현지 교통비 4,500원하면 약 30,00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 왕복 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더 이상 질의 있

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의안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2호 의안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 김응복 위원 : 여기에 보면 별표하고 별지가 있는데, 별지 첨부는 안된 것 같아요.

별표만 첨부되어 있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랬는데.....

○ 의장 김영세 : 관계관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느분이 와서 김응복위원 서류를 한번 봐주세요.

○ 김응복 위원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랬는데.....

(집행기관석에서 한명 김응복위원석으로 가서 서류 설명후 들어감)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 지금 학교를 신축할 때 건물기 위치를 어느 쪽에다가 세우느냐 하는 것은 대개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충주의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의 건물 방향이라든지 위치가 잘못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충주 예성국민학교도 학교의 위치가 대개 남향이어야 햇빛도 잘들고 따듯하고 한데 서북쪽으로 비뚤하게 학교가 서있어요.

그때는 장비가 부족해서 터를 고르는 작업은 편평하게 못했다 하더라도 위치만이라도 정남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북쪽으로 학교가 서있어요.

그리고 남산국민학교는 남향은 남향인데 은동장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학교 바로 옆에다가 지금 고층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니까 일조권 때문에 학교하고 건축회사하고 지금 시비가 붙어서 한 3개월째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돈으로 그쪽에서 5억을 주느니, 뭐니 그러고 하는데 학교를 새로 신설할 때 위치를 잘 좀 선정을 해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없도록, 이거 대개 건물의 위치를 선정할 때 누구 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는지?

○ 의장 김영세 : 질의를 하시려는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 그 다음에 두번째로 여기 지금 폐교하고 분교장 격하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시·군교육청

에서도 가서 검토를 하셨겠고, 도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잘 청취 되어가지고, 이게 대개 한 2년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후에 상황이 바뀐 것은 한번 바로 잡으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일선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본청에서도 한번 현지를 살펴가지고 잘못해서 폐교되거나 분교로 격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하실 준비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질의를 먼저 다 하고서, 답변 들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권혁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두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별적으로 행정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는, 말씀은 듣기는 들은 겁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당장은 분교장으로 폐지는 안되는데 앞으로 학생 감축 추세로 보아서 아마 2-3년 안쪽에는 폐지대상이 되는 학교다, 이렇게 누가 보던지 예상이 되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숙직실도 지어주고, 과학실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므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 학교는 교장이 배경이 좋아서 그렇다'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뭔가 의혹을 느낀다든가, 납득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흑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년 앞을 내다보고서 여러 가지 통계들 잡는가, 몇 년 뒤에 학교가 폐지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보는 상당히 힘든 건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음성군에 충도국민학교가 벌써 폐지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폐지 된다는데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폐지가 언제 됐는지, 그걸 확실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사의 위치 선정은 누가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의 책임자인 교육장께서

교지의 그 지형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반듯하든지, 남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다가 다시 증축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치가 선정이 혹 잘못된 그런 관계는 증·개축을 할 경우에 위치를 밝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폐교학교를 폐지한다든지, 본교장을 격하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하는게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본교장으로 격하를 한다든지, 학교를 폐지한다 하는 계획은 당해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학생수의 감소 추이를 봐가지고 이미 예정화 계획을 하고 폐지년도가 될 때까지 수차에 걸쳐서 당해 현지 교육책임자인 교육장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관계관이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일반 행정기관인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

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권혁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교장 폐지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간다, 여기에 대한 폐지 규정은 뭐냐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교장 폐지는, 본교장 폐지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한 투자는 3년전까지는 벽지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에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89년부터는 이것이 그렇게 벽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지학교에 대한 투자는 폐지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한 투자는 학생수 감소 추이를 검토해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와서는 폐지가 예상된 학교에 저희들이 재정을 투자하는 그러한 우려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도국민학교가 이번 도립학교설치조례규정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91년 3월 1일자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풍위원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더하시죠.

○ 권혁풍 위원 : 거기 학교에 교명을 짓는데 지명을 갔다가 많이 따서 짓는데 지명아닌 역사적인 지방의 유래라던가, 뭔가 좀 운치있는 이름도 붙일 수가 있는데, 학교 이름을 지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학교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학교 교명을 짓는 것은 권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지명에 유래라든지, 또 여러가지 역사적인 사항이 있으며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해 교육책임자인 교육장, 교육청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교명을 짓고, 또 교명을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상으로 불합리한 것 같으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을 수가 없고 좀 희망을 줄 수 있고, 꿈나무들에게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이러한 이름이라고 그러면 다른 이름이라도 짓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

없으신가요?

<p>("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p> <p>예,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p> <p>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 시면 말씀하세요.</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p> <p>(의사봉 3타)</p> <p>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의의가 없 으시죠 ?</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의안인 충청 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감사합니다.</p> <p>이제 지방교육자치제에 시행 2차년을 맞 게 되었습니다.</p> <p>지난해 보다도 금년은 더욱 원숙하게 지 방교육자치제도의 정립을 위하여 많이 노력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금년에도 우리모두 열과 성을 다해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면서 이 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이상으로 제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0시 23분 폐회)</p>
---	--

- 출석의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7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행정과장 엄갑도, 시설과장 박성근

1992年度

主要業務計劃

忠清北道教育廳

目 次

I. 一般現況	43
II. 忠北教育의 志向	50
III. '92 主要業務計劃	51

I. 一般現況

1. 地域與件

2. 行政組織

3. 學校現況

4. 學校法人現況

5. 財政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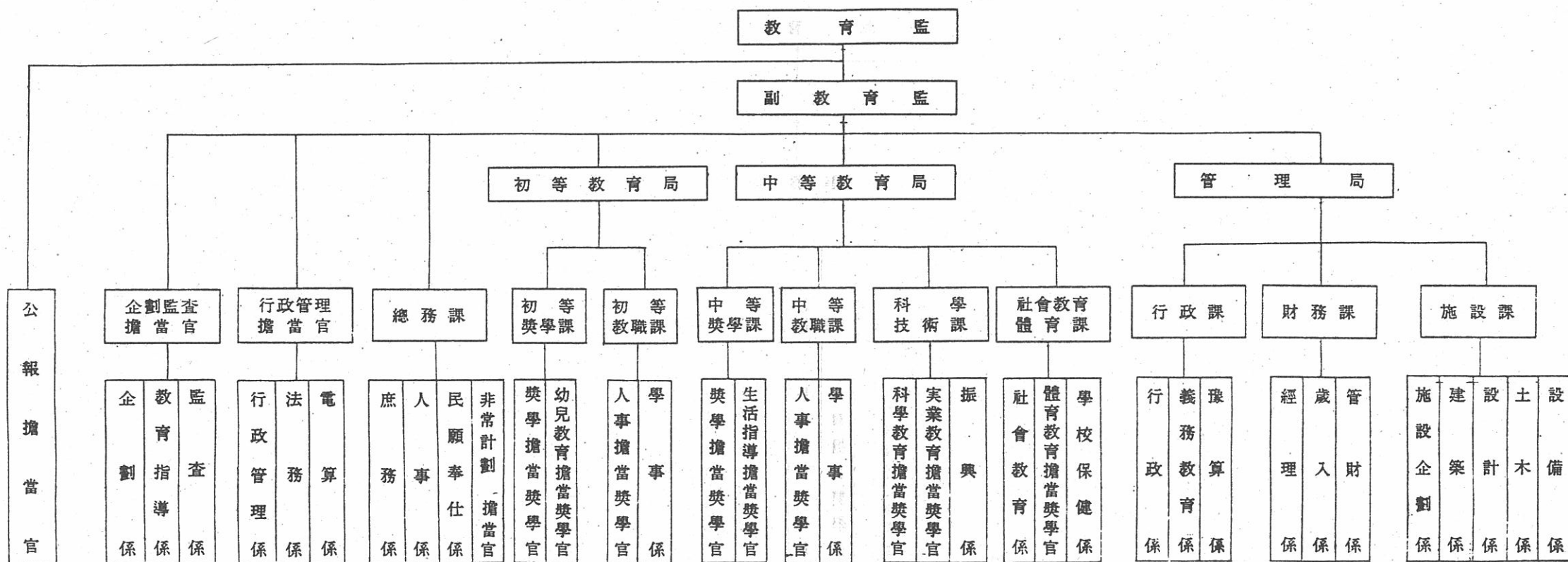
1. 地域與件

- 面積：7,436 *km*² (全國의 7.5 %)
- 人口：1,414 千名 (全國의 3.3 %) / 家口數 355 千
- 行政區域：3 市 10 郡 161 邑面洞
- 就業構造：1 次産業 36.4 %，2 次 18.0 %，3 次 45.6 %
- 地域의 特殊性
 - 國土의 中心部，首都圈 隣接 內陸
 - 山地가 79 % / 溫和한 氣候 / 豐富한 用水와 觀光資源
 - 3 個의 高速國道 通過등 交通의 要衝地
 - 尖端産業施設 및 農·工團地의 擴張
 - 忠·孝·禮의 崇尚과 教育·文化의 高장
 - 世界最古의 印刷文化 發祥地：興德寺址
 - 離農增加에 따른 農村學生數의 激減

2. 行政組織

○ 機 構

• 本 廳：3局・3擔當官・10課・35係



• 直屬機關：6

• 下級教育行政機關：11(教育廳)

○ 定 員：13,968名

• 教 員：10,977名

• 教 育 專 門 職：208名

• 一 般 職：894名

• 技 能 職：1,889名

※ 總教員數(國・私立包含)：13,107名

3. 學校現況

'92. 1. 1. 現在

區 分	學校數	學級數	學生數	教員數
計	886	8,165	319,182 全國對比3.2%	13,107
幼稚園	374	598	15,794	710
國民學校	326	4,318	149,146	5,299
中學校	109	1,610	75,863	3,449
高等學校	68	1,446	72,082	3,387
特殊學校	7	94	926	142
產業體附設學校	2	52	2,670	70
特別學級	(4)	47	2,701	50

4. 學校法人現況

'92. 1. 1. 現在

法人數	學 校 數					教員數	學生數
	國	中	高	特殊	計		
24	1	20	18	2	41	1,613	41,098

5. 財政現況

○ 款別内譯

'92. 1. 1. 現在

(單位：千圓)

歲 入		歲 出	
款 別	金 額	款 別	金 額
1. 財産收入	209,134	1. 教育委員會費	251,225
2. 使用料 및 手數料	26,839,396	2. 教育行政費	19,337,985
3. 實習收入	851,397	3. 教育事業費	4,766,019
4. 地方教育財政交付金	253,188,059	4. 學校費	290,822,456
5. 地方教育讓與金	57,628,000	5. 施設費	7,149,429
6. 補助金	218,541	6. 教育環境改善費	13,973,058
7. 寄附金	1	7. 過年度支出	7
8. 過年度 收入	2	8. 償還金	35,384
9. 轉入金	839,970	9. 豫備費	3,655,352
10. 地方教育債	1		
11. 雜收入	216,413		
12. 移越金	1		
合 計	339,990,915	合 計	339,990,915

○ 性質別 內譯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構成比(%)	備 考
歲 入	計	339,990,915	100	
	自體收入	28,116,344	8.0	
	依存收入	311,874,571	92.0	
歲 出	計	339,990,915	100	
	人件費	263,805,130	77.6	
	學校運營費	43,287,305	12.8	
	施設費	7,149,429	2.1	
	環境改善 事業費	13,973,058	4.1	
	行政費 及 事業費	8,120,641	2.4	
	豫備費	3,655,352	1.0	

II. 忠北教育의 志向

教育의 目標

祖國의 先進化에 寄與할
自主 · 創造 · 道德的 韓國人 育成

教育行政의 方向

- 教育本質을 追求하는 教育
- 未來指向的인 教育
- 平生教育의 基盤을 造成하는 教育
- 漸進的인 教育體制改善

Ⅲ. '92主要業務計劃

1. 國民精神의 振作
2. 基礎教育의 充實
3.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4. 教育의 秀越性 追求
5. 學生文化의 形成
6. 國際化教育의 擴充
7. 教育環境의 刷新
8. 教育自治의 內實

1. 國民精神의 振作

- * 民族共同體 認識 / 凝集力의 強化
- * 어릴때부터 基本生活習慣 定着
- * 協同 / 奉仕精神을 갖춘 民主市民育成

○ 統一力量의 培養

- 民族共同體 統一指向教育
 - 愛國意識 培養 / 國慶日 / 紀念日 教育行事 實施
- 民族分斷을 克服하는 教育
 - 民族의 和合과 同質性 回復 / 南北韓 U·N 同時加入
- 北方政策과 共產圈 狀況變化에 對處하는 教育

○ 節制教育의 強化

- 새 秩序·새 生活 實踐
 - “ 잘 살기에서 바르게 살기 ” 로 社會氣風 造成
- 國民精神 改新 - 先導活動 : 道德性 回復
- 過保護 / 過消費 / 無規制의 一掃
 - 禮節教育 : 基本生活習慣 指導 - 民主市民의 資質 涵養
 - 經濟教育 : 勤儉·貯蓄生活 - 先進經濟國의 跳躍기틀 造成
 - 秩序教育 : 規範生活 - 學校 / 家庭 / 社會에서 自律實踐力 育成
- 節制教育을 통한 汎國民的 次元의 教育弘報 展開
 - 社會正義 實現 / ‘ 일 ’ 하는 氣風 展開 / 選舉文化 定着
 - 10 % 節約運動의 展開 : 廢品再活用

○ 環境 教育의 活性化

- 環境淨化 教育의 內實
 - 學校周邊 “ 環境淨化의 날 ” 運營 : 每月 첫째週 土曜日
- 自然사랑 教育의 強化
 - 自然保護에 대한 認識 提高 : 環境監視의 自任

2. 基礎教育의 充實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世紀를 對備하는 人性重視 教育* 能力과 適性を 기르는 機會均等 教育 |
|--|

- 教育課程 運營의 正常化
 - 바른 學力觀의 定立
 - 教育本質의 回復 : 知/德/體/技의 均衡 調和
 - 修學能力의 培養 : 言語/數理·探究/英語의 基礎
 - 생각하고/짓고/만들고/키우고/뛰는 勞作學習
 - 自己學習力의 培養 : 教育放送 積極 活用
- 學習方法의 轉換
 - 未來社會 對備 教育
 - 討議式 學習方法의 一般化
 - 初等(幼)教育
 - 基礎·基本生活習慣의 形成 : 우리말/우리글 바로쓰기
 - 즐거운 教室 運營으로 思考·探究學習 展開
 - 中等教育
 - 學習能力 및 創意力 啓發 重視 : 讀書力 增進
 - 進路指導의 內實 : 適應力의 培養
 - 特殊教育
 - 特殊學校·學級 教育課程의 內實
 - 特殊教育 對象者의 判別 및 教育措置
- 評價方法의 改善
 - 目標指向 評價觀의 定着
 - 評價結果의 教育的 再投入 : 評價目標의 詳細化
 - 指導教師의 直接出題/採點 : 年1~2回
- 特別活動의 活性化
 - 學藝·藝能行事 本然의 教育機能 回復 : 學父母 參與 誘導
 - 自己實現의 成就熱 高揚 : 立志教育/素質·適性啓發

3. 科學·技術教育的振興

- * 實驗／實習爲主의 體驗中心學習
- * 情報化社會에 適應教育／進路教育機會의 賦與

- 基礎科學教育의 內實
 - 必須 實驗·實習單元의 徹底한 履行
 - 實驗·實習報告書 作成 授業展開 : 實驗室教育
 - 繼續觀察記錄의 習慣 形成 : 飼育／栽培
- 科學英才教育의 內實
 - 科學英才班(探究班)運營 : 下級教育廳 및 國·中·高
 - 科學／數學(算數)競試大會／青少年科學競進大會 參加
- 컴퓨터教育의 充實
 - 優秀學生 早期選拔 및 體系的 指導
 - 컴퓨터教育센터 運營의 活性化 : 33 個 中心學校
 - 教育用 컴퓨터 普及 擴大 : 1,456 臺
- 實業系高校 教育體制 改編
 - 一般系高校의 職業課程 併設 運營 : 藥城女高(衣裳科)
 - 一般系高校의 實業系 轉換
 - 會坪女高⇒會坪商高, 忠州綜高⇒忠州商高
 - 農業系高校의 學科 改編
 - 堤川農高 : 農業流通情報科, 永同農工高 : 食品製造科
 - 工業系高校 新設 : 忠北工高('93)
 - 工業系高校의 學科 新設
 - 沃川工高 : 電子科, 會坪工高 : 電子計算科
 - 米院工高 : 機械／電子科, 韓國鑛山工高 : 電氣科
 - 美江工高 : 機械科
- 科學營農教育의 內實
 - 農業機械教育의 活性化／地域 高所得作物 栽培技術 普及
 - 農高 共同實習所 運營 充實 : 淸州農高外 5 個校

4. 教育의 秀越性 追求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教育의 普遍性과 秀越性의 調和* 劃一性止揚 / 個性尊重 / 素質啓發 教育 |
|---|

○ 秀越性教育의 內實

- 特殊(英才)教育對象者의 體系的 管理
 - 幼稚園부터 高校까지 : 카드作成 活用
 - 科學, 藝·體能, 外國語, 一般英才의 秀越性 啓發
 - 劃一性教育 脫皮 : 一般 英才教育 研究
- 技能優秀教師 巡廻指導의 擴大
- 特性化 高校로 連繫하는 中·國校의 英才教育體制 確立

○ 外國語教育의 活性化

- 未來社會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는 教育
 - 國民學校부터 多國語 特活課程 運營 : 會話中心
- 多國語 口話大會 開催 : 國·中
- 高等學校의 第2外國語 複數選擇 擴散
 - 多國語教育 示範地域 持續 運營 : 忠州市 一般系高校
- 原語民 講師 活用方案 研究 / 多國語 特別教室

○ 高校 特性化 定着

- 忠北體育高 運營의 內實
 - 體育選手의 系列化, 精銳化 : 9種目
- 忠北科學高 運營의 內實
 - 英才次元 프로그램 開發 適用
- 淸州中央高 運營의 內實
 - 藝術系列 : 美術 / 音樂 / 舞踊科
- 淸州外國語高等學校 設立 : 獨 / 佛 / 中 / 日 / 西 / 露語科
- 忠州中山外國語高等學校 設立 : 5個外國語科

5. 學生文化的 形成

- | |
|----------------------------------|
| * 青少年들의 自治能力 伸張 / 民主的 秩序와 節次의 尊重 |
| * 青少年團體 參與 / 共同體 意識 培養 |

- 人間과 平和의 尊重
 - 學生 自治活動의 活性化
 - 民主的 會議進行 : 參與, 討議, 妥協, 合議, 承服
 - 克己心 培養活動 機會 提供
 - 集團生活의 智慧 : 意志力 / 自制力 / 自治力
 - 對人關係의 能力培養 / 準據集團生活 擴大 / 最大多數의 利益

- 教育機會의 擴大
 - 獨學情報相談室 運營 : 教育廳 / 中央圖書館
 - 相談活動의 活性化 : 3 地域 5 室

- 地方文化揚達의 役割 分擔
 - 傳統文化의 繼承意識 培養
 - 國風尊重教育 : 歲時風習 理解 / 어린이 民俗잔치
 - 國樂教育의 內實 : 傳來民謠 理解
 - 내고장 偉人, 先烈의 龜鑑事例 指導
 - 忠北人의 氣概 宣揚 : 北極點의 太極旗 意義
 - 丹齋教育賞의 擴大 : 教員 / 學生 / 一般人

- 健全 意識의 定立
 - 健全한 校風·傳統 樹立 : 校歌齊唱 運動
 - 青少年團體 支援 : 1 學生 1 團體 加入 勸獎
 - 進路 / 人口 / 性 / 浩然之氣 教育의 充實
 - 事故豫防教育의 積極化 : 藥物 誤·濫用 防止
 - 地域中心 生活館 運營의 活性化 : 生活教育의 內實
 - 忠北學生綜合野營場 機能 擴充 : 修鍊機會의 擴大

6. 國際化 教育의 擴充

- | |
|--------------------------|
| * 傳統과 外來文化의 調和 / 主體性 確立 |
| * 國際文化의 새로운 視角 定立을 위한 教育 |

- 國際理解 教育의 強化
 - 外來文化에 대한 主體的 理解와 受容
 - '93 大田 世界博覽會 開催 對備 : 經濟올림픽
 - 國際的 國威宣揚에 따른 影響力增大 認識 提高
 - 時事 契機教育 強化 / 國益觀 定立
 - 國外研修人士 招請機會 誘導 : 外國 바로알기
- 國際交流 教育의 擴大
 - 外國과의 結緣 및 訪問交流의 勸獎
 - 國際行事に 自律參與 支援
 - 教職員 國外研修의 內實 : 亞洲 / 美洲 / 歐洲
 - 外國語教師 國外 語學現地研修 擴大
 - 英語 · 獨語 · 佛語教師
 - 在外 國民教育의 地域分擔 遂行
 - 在美 / 日 / 中 / 蘇 등
 - 國語 / 國史 / 傳統文化의 交流
 - 世界 잼버리大會 意義 持續
- UR對備 教育의 強化
 - UR의 理解와 受容
 - 市場開放에 따른 經濟教育의 內實
 - 國產品 愛用 / 에너지 節約 / 儉素한 生活 實踐
 - 農産物 輸入開放에 對處하는 教育
 - 우리 農産物의 利用 擴大
 - 國際競爭力이 있는 優秀農産物의 開發
 - 知的 所有權問題의 바른 理解 : 尖端技術 / 特許權

7. 教育環境의 刷新

- | |
|---|
| <p>* 教育環境改善 特別會計 運營 內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象學校 : 國, 中, 高等學校• 事業期間 : '92. 1. 1 ~ 12. 31• 事業規模 : 139 億원 投資 |
|---|

○ 教育與件의 改善

- 學習指向 教育環境 造成
 - 學習教材 作目 / 有實樹 / 常綠樹 植栽 展開
- 教室의 多機能化 推進 : 資料室 / 講堂 / 工作室 등
- 教育施設工事 關聯 教員意見 收斂
- 學校環境의 特別事業 展開 : 139 億원
 - 教員勤務環境 改善 : 39 億원
 - 老朽教育施設 改善 : 100 億원
- 學校新設 : 9 個校 (國 6, 中 1, 高 2)

○ 保健 / 體育教育의 內實

- 生涯教育의 助長
 - 全員體育의 活性化 : 中間體育
 - 保健 / 體育課程 運營의 內實
- 給食學校 運營의 內實 : 67 個校 (僻地型 24, 農村型 30, 都市型 6, 特殊學校 7)
- 給食學校의 指定 擴大 : 12 個校 (農村型 10, 特殊學校 1, 都市型 1)

○ 小規模學校 運營의 適正

- 少人數 및 複式學級 教授方法 研究
- 小規模國校 統·廢合 : 分教場格下 14 個校, 廢止 20 個校
- 廢止學校 施設 教育的 再活用 推進

○ 私學의 均衡的 支援

- 私立學校 財政缺陷額 支援 : 39 個校 153 億원

8. 教育自治의 內實

- | |
|----------------------------|
| * 現職研修 內實로 教職員の 專門性/民主性 提高 |
| * 父母의 役割 增大로 家庭教育 機能 提高 |

- 學校運營의 自律化
 - 公開行政의 實現 : 人事/財政
 - 教師와 學校의 苦衷을 풀어주는 獎學行政 具現
 - 教職의 뜻 모으기/教育의 자리잡기
 - 地域別 獎學協力體制의 活性化 : 專門性的 發揮
 - 學校長의 透徹한 教育觀에 의한 指導性 發揮
 - 學校長의 勤務地 常住
 - 學校經營에 全職員 參與風土 造成 : 研究雰圍氣
 - 教育專門職 論文集 發刊
 - 公職者 服務紀綱 確立의 持續的 推進
 - 意識改革과 資質向上 : 自律/創意/責任
 - 模範教師의 美談事例 發掘 宣揚 : 사랑의 架橋 發刊
- 家庭·社會와 連繫한 教育機能 活性化
 - 學父母 및 地域人士의 學校教育奉仕制 誘導
 - 學父母와의 對話機會 擴大 : 教育相談
- 教育自治의 發展 圖謀
 - 教育自治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弘報 持續
 - 忠北消息 發刊 : 年 12回
 - 學校教育 發展을 위한 獎學資料 發刊
- 學校業務의 效率性 提高
 - 教員業務輕減의 持續 推進
 - 事務職員 配置 擴大/學校業務의 電算化
 - 忠北學校安全共濟會 運營/學校災害復舊共濟會 加入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	---

발의년월일 1992년 1월 일
발 의 자 권혁풍 교육위원
의 3 인

1. 제안이유

현재 교육위원에게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4473호)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육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조례 제1조)
-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와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4조)

3. 예산조치

추후 추경시 반영

4. 참고법령(별첨)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32조(준용)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여비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u>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4 조(여비지급) <u>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u> 여비를 지급한다.</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u> ----- ----- -----</p> <p>제 4 조(여비지급) <u>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u> 여비를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참고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4 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32조, 제34조의 2,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 제 32 조(의원의 보수)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1992.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학교신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본교폐지, 본교장격하, 본교장폐지, 행정구역 변경, 학과 개편등으로 충청북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신설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외 6교) : 별 첨
- 나. 본교폐지(충주-복성국민학교) : 별 첨
- 다. 본교장격하 학교 (수룡국민학교외 14교) : 별 첨
- 라. 본교장폐지 학교(북일국민학교 청에원본교장외 19교) : 별 첨
- 마.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 학교 (증평여자고등학교외 1교) : 별 첨
- 바. 위치이전 학교 (목도중학교) : 별 첨
- 사. 행정구역 변경 지역학교 (추풍령국민학교외 4교) : 별 첨
- 아. 지적 정리에 따른 지번 부여학교 (봉정국민학교) : 별 첨

3. 개정근거

- 가. 교육법 제82조 (설립자)
- 나. 교육법 제85조 (학교의 설립·폐지)
- 다. 영동군 군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91.7.5.조례 제1332호)
- 라. 단양군 단성면설치와음·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91.12.31.조례 제1301호)
- 마.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4. 조 례 안 : 별 첨

5.기타 참고 사항

- 도립학교설치개정 조례중 주요 골자:별첨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 예산조치: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별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별표1,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 등 학 교

명 칭	위 치
청주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869번지
충북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본정동 316-2번지
청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을량동 534번지
청주중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청주의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금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산 15-4번지
충부체육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산 15-4번지
충부과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번지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동 322번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 동 79번지
충부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을량동 663-9번지
충주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58번지
충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55번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충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밖동 72번지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35번지
제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163-1번지
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80번지
제천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45번지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765번지
제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82번지
미원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번지
부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97-1번지
보은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보은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71-2번지

명 칭	위 치
보은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00번지
우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우천군 우천읍 삼양리 115-4번지
청산고등학교	충청북도 우천군 청산면 백은리 333-1번지
우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우천군 우천읍 문정리 247번지
우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우천군 우천읍 금구리 40번지
영동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번지
황간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431번지
학산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7-3번지
영동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6번지
진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 1번지
광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12번지
진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662번지
진천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상리 166번지
괴산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
증평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무도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무도리 360번지
증평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동 620번지
음성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번지
금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주덕고등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주덕면 신충리 130-3번지
제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팔송리 360번지
청풍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단양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번지
단산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단양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부하리 58번지

(별표 3)

중
학
교

명 칭	위 치
청주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 동 8번지
주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 동 367번지
청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2동 6-3번지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29-5번지
청주남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124-3번지
청주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47-5번지
청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261-174번지
서원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485번지
봉명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1305번지
청은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은동 73-18번지
가경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13-1번지
충주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92번지
충일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1083-4번지
충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69-1번지
충주여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산 532-2번지
제천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5-1번지
제천동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번지
제천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71-1번지
의림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9-1번지
미원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번지
문의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108번지
부강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500번지
오창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 리 151-4번지
내수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번지
가덕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255번지

명 칭	위 치
현도중 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256-3번지
옥산중 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77-3번지
보은중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30번지
보덕중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27번지
원남중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번지
회인중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속리중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내북중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진리 5-1번지
보은여자중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2번지
옥천중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번지
청산중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은리 333번지
이원중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61번지
안내중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89번지
동이중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672번지
옥천여자중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5-2번지
영동중 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용문중 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04번지
황간중 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26-1번지
상촌중 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학산중 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07-3번지
진천중 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번지
광혜원중 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512번지
덕산중 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동리 566번지
이월중 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송림리 455-5번지
백곡중 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76-1번지
진천여자중 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43번지
괴산중 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2번지

명 칭	위 치
괴산부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25번지
증평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천동 600번지
연풍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88번지
무도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무도리 360번지
청천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55번지
증평여자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송년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장연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562번지
칠성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240번지
감물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번지
음성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내리 274-3번지
음성여자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0-3번지
무극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3-2번지
대소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613-7번지
삼성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431-1번지
감곡중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91-1번지
수안보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상모면 은천리 51번지
주덕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주덕면 신중리 130-3번지
신니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신니면 신청리 산 16-1번지
노은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문성리 368번지
양성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응포리 172번지
가금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증원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대전리 1507-1번지
산척중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영덕리 178-2번지
청풍중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수산중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수산리 609번지
한수중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322번지

명	칭	위	치
북양중학교		충청북도 북양군 북양면 정동리	570번지
북양중학교		충청북도 북양군 북양면 장정 1리	864-1번지
삼주중학교		충청북도 북양군 삼주면 시부리	1100-2번지
단양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번지
단양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면 상방리	79-1번지
맥포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맥포읍 정동리	118번지
가곡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단산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의상면 임현리	311번지
영춘중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496-1번지
영춘중학교	별양면 별양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5번지

국 민 학 교

명 칭	위 치
주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48번지
교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80번지
석 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10번지
중 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동 4번지
청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은동 127번지
한 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1동 560번지
덕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을량동 656번지
남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219-1번지
서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부대동 977번지
우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37번지
무 흥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무흥동 372번지
용 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담동 186번지
용 담 국 민 학 교 현 양 원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월오동 71-1번지
운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543-7번지
청 부 동 도 구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2동 61번지
창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항동 351번지
사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곡2동 38-2번지
강 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비하동 123번지
내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곡동 12번지
서 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훈동 184번지
현 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현감동 91번지
금 천 지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15-1번지
북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709-4번지
봉 명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205번지
학 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학교동 865번지

명 칭	위 치
도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260-1번지
북일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주공동 428번지
은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은동동 430번지
봉정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2141번지
산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택지개발지구내
을량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을량동 1034번지
가경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752번지
충주교현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담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충주열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단월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북행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북행동 577-1번지
말천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남한강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역전동 1924번지
충주성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성암국민학교 동신분교	충청북도 충주시 북별동 447-10번지
충주성암국민학교 광진분교	충청북도 충주시 종인동 510-3번지
충주태평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역전동 181번지
충주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세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세성국민학교 살미분교	충청북도 증평군 살미면 내사리 600-3번지
세성국민학교 영인분교	충청북도 증평군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세성국민학교 향산분교	충청북도 증평군 살미면 향산리 379번지
수안보국민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상모면 수리리 672번지

명 칭	위 치
수회국민학교 필봉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토계리 263번지
네소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이안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이류면 완오리 889번지
배현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이류면 배현리 480번지
주덕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주덕면 신중리 72번지
덕신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주덕면 재내리 265-1번지
용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등락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은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노은국민학교 수룡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수룡리 554-1번지
수삼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양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용대리 257번지
양성국민학교 영죽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영죽리 264-4번지
강천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북미리 89-2번지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단암리 412-1번지
능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금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창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창동리 산 22-2번지
가흥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가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금가면 하담리 294-2번지
오석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량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동량국민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동량국민학교 하천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손동리 336번지
대미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척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명 칭	위 치
산척국민학교 석천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석천리 203번지
엄정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추평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추평리 455-6번지
목계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태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소태국민학교 덕은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덕은리 229번지
야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야동국민학교 하남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주치리 645-1번지
동명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명동 59번지
의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당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영천2동 255-12번지
남천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남천동 1번지
화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화산동 산 16-5번지
청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청전동 470번지
홍광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청전동 (아산) 396번지
두학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지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명지동 48-1번지
재천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청전동 652번지
금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군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금성국민학교 장선분교장	충청북도 재천군 청풍면 장선리 98번지
양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군 금성면 양화리 623번지
청풍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군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청풍국민학교 양평분교장	충청북도 재천군 청풍면 독고리 산 21-7번지
청풍국민학교 금산분교장	충청북도 재천군 수산면 상천리 산 8-3번지
수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군 수산면 내리 168번지
수산국민학교 추동분교장	충청북도 재천군 수산면 도진리 175번지
대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군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

명 칭	위 치
덕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덕산국민학교 월악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월악리 596번지
선 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선교리 92-3번지
선립국민학교 도기본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기리 340-2번지
유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신현리 606번지
유덕국민학교 부영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수산리 833-2번지
송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 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백은면 평동리 600번지
화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백은면 화당리 84-1번지
화당국민학교 은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백은면 은학리 320번지
봉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연박리 921번지
봉양국민학교 명암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명암리 605-4번지
봉양국민학교 학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옥전리 180번지
봉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마곡리 540번지
봉남국민학교 삼선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삼거리 538번지
왕 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미당리 757번지
공 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공전리 265번지
송 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시곡리 1164번지
송학국민학교 송한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송한리 2구 543번지
입 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입석 3리 609-2번지
남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이목리 108-1번지
갈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갈산리 341-1번지
산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성면 관정리 277-1번지
미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금 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기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251-1번지
용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291번지

명 칭	위 치
음곡국민학교 종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387번지
가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행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상 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남 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신 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동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7361-1번지
두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남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275번지
갈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 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국민학교 소전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소전리 653-2번지
도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 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육 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노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
부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의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의천리 294번지
강 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내국민학교 저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번지
강 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오송리 60-1번지
상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상봉리 242-1번지
만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만수리 163번지
만수국민학교 공북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공북리 337번지
육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육산면 오산리 223번지
육산국민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육산면 호죽리 300-3번지

명 칭	위 치
금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223번지
소 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 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가 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각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28-3번지
유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북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3번지
석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데 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데길리 228번지
내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1번지
비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비상리 200번지
수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수리 263-1번지
수 성 국 민 학 교 입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입상리 425-1번지
구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구성리 265번지
삼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동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종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학 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증동리 9-1번지
중 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증초리 408번지
수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1번지
수 정 국 민 학 교 법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210-2번지
북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43번지
삼 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2번지
관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관 기 국 민 학 교 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9번지
관 기 국 민 학 교 소여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470-1번지

명 칭	위 치
관기국민학교 기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328-2번지
세종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종리 575-2번지
탄부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사직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보덕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5-5번지
삼승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관동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네망리 536-1번지
송죽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92-4번지
수한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17-2번지
동정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회남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인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회인국민학교 회동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고석리 123-1번지
내북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원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식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84번지
아곡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산외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치리 52번지
장갑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318번지
죽향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삼양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관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관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83번지
동이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우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우산국민학교 청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872-1번지
안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명 칭	위 치
삼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청정리 510-1번지
안 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안내국민학교 용촌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160번지
안내국민학교 대동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5-1번지
청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국민학교 신서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번지
묘 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19-1번지
능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화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청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청산국민학교 대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173-1번지
예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청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무리 675-1번지
이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정리 14-7번지
지 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 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군 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45번지
대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증 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영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영동국민학교 화신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228-3번지
이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 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화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4-1번지
용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13번지
구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명 칭	위 치
부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98번지
황 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2번지
용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43번지
노 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추 풍 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금면 추풍령리 375-1번지
추풍령국민학교 신안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황금면 신안리 63번지
매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천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 463-2번지
상 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상촌국민학교 삼봉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360-4번지
황 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01번지
양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모동리 321번지
구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6번지
미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용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학산국민학교 광평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549번지
봉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 563-1번지
범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양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양산국민학교 천태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08-1번지
심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금 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7번지
진 천 상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 천 삼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성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명 칭	위 치
신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번지
이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증산리 597-7번지
금 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봉리 518-3번지
한천국민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매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초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구정국민학교 오상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문 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방죽리 297번지
문백국민학교 은탄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338-2번지
문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만 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성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498-2번지
상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7-18번지
명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 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신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469번지
제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89번지
감 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이 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640번지
장 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광 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명 칭	위 치
연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연풍국민학교 신품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37번지
오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04-1번지
칠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의 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의사리 152번지
문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번지
광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송 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송면국민학교 삼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30번지
덕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신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어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287-1번지
어룡국민학교 대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196-1번지
청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운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209-2번지
장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증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교동 1056번지
죽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 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신동 1105-2번지
도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화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백 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증흥리 1-1번지
소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소수국민학교 북상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번지

명 칭	위 치
광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복 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복도리 290번지
추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추산국민학교 삼방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304번지
세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213-3번지
수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평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덕 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무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국리 81번지
무국국민학교 사정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949번지
용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국리 50번지
오 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 장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통리 371번지
원남국민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하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 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 윤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번지
능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 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구면 신양리 451-1번지
생구국민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구면 관성리 13번지

명 칭	위 치
오 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곡면 생리 570번지
감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10-2번지
상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 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원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단양국민학교 여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241번지
상 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단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가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국민학교 황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193번지
장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노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5번지
금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가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국민학교 향산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347-4번지
대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보 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영 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별 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별방국민학교 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동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의 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품리 760번지
어 상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어상천국민학교 연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631번지
어상천국민학교 금당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번지

명 칭	위 치
선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 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도 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1리 63번지
가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적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대 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별표1)

신.구 대비표

(고등학교)

현			면		
명칭	위치	비고	명칭	위치	비고
청주 고등학교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869번지 생략		
청주 중앙고등학교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생략		
증평 여자고등학교 생략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8번지 생략		청주 의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신설
금왕 고등학교 생략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생략		
			증평 상업고등학교	학과 개편
			
			금왕공원고등학교	학과 개편
			

(별표3)

신.구 대비표

(중학교)

현			면		
명칭	위치	비고	명칭	위치	비고
청주중학교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8번지 생략		
청운중학교 생략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73-18번지 생략		
무도중학교 생략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무도리 <u>247번지</u> 생략		<u>가경중학교</u>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13-1번지 <u>360번지</u>	신설 학교 이전
단성중학교 생략	충청북도 단양군 <u>단양읍</u> 상방리 79-1번지 생략	 <u>단성면</u>	행정구역개편

(별표 4)

신.구 대비표

(주민등록)

현행		비고		개정	
명칭	위치		명칭	위치	비고
주안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영안동 48번지				
생략	생략				
부안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부안동 133번지		사	결	폐지
생략	생략				
영진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영진동 244번지			영진2동 2141번지	신설
			산파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산파동택지개발지구내	신설
			용광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용광동 1034번지	신설
			가경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가경동 752번지	신설
생략	생략				
충주대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영선동 181번지				
생략	생략		충주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신설
수안보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수안보동 104번지		사	결	폐지
생략	생략				
수영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수영동 554-1번지		수영국민학교		폐지
생략	생략				
부안국민학교	충청북도 영주시 부안동 201-5번지		사	결	폐지

신.구 대비표

(국민학교)

현			경		
명 칭	위 치	비 고	명 칭	위 치	비 고
단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앙성면 단암리 412-1번지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장	분교장 격하
생 락	생 락		
동량국민학교 지동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하천리 13-3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락	생 락		
산척국민학교 명서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명서리 493-7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락	생 락		
두학국민학교 자작분교장	충청북도 재천시 자작동 256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락	생 락		
명지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명지동 48-1번지		재천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시 청전동 652번지	신 설
생 락	생 락		
금성국민학교 충전분교장	충청북도 재천군 금성면 포전리 산27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락	생 락		
수산국민학교 단산분교장	충청북도 재천군 수산면 고명리 299-1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락	생 락		
추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재천군 수산면 도전리 175번지		수산국민학교 추동분교장	분교장 격하

신.구 대비표

(국민학교)

현			경		
명 칭	위 치	비 고	명 칭	위 치	비 고
생 략 월악국민학교	생 략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596번지	 월악국민학교 월악분교장	분교장 격하
생 략 학전국민학교	생 략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옥전리 180번지	 봉양국민학교 학전분교장	분교장 격하
생 략 용곡국민학교 가양분교장	생 략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332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략 종암국민학교	생 략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387번지	 용곡국민학교 종암분교장	분교장 격하
생 략 문의국민학교 구룡분교장	생 략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구룡리 19-1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략 문의국민학교 회서분교장	생 략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등리 81-1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생 략 저산국민학교	생 략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번지	 강내국민학교 저산분교장	분교장 격하
생 략 회남국민학교 분저분교장	생 략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71번지	 삭	계	분교장 폐지

신.구 대비표

(국민학교)

현			경		
명 칭	위 치	비 고	명 칭	위 치	비 고
생 략 회 인 국민 학교 회 동 분 교 장	생 략 충청북도 보은군 회부면 용곡리 95-2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 략 산 의 국민 학교 산 대 분 교 장	생 략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 118-1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 략 이 식 국민 학교	생 략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84번지		내 부 국민 학교 이 식 분 교 장		분교장 격하
생 략 대 등 국민 학교	생 략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5-1번지		안 내 국민 학교 대 등 분 교 장		분교장 격하
생 략 신 서 국민 학교	생 략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대리 667-2번지		청 성 국민 학교 신 서 분 교 장		분교장 격하
생 략 이 수 국민 학교 심 원 분 교 장	생 략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심원리 353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 략 추 풍 령 국민 학교	생 략 충청북도 영동군 황금면 추풍령리 375-1번지			추 풍 령 면	행정구역개편
생 략 추 풍 령 국민 학교 신 안 분 교 장	생 략 충청북도 영동군 황금면 신안리 63번지			추 풍 령 면	행정구역개편
생 략	생 략				

신.구 대비표

(국민학교)

현			변 경		
명 칭	위 치	비 고	명 칭	위 치	비 고
<u>양강국민학교</u> <u>산막분교장</u>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485-1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 략	생 략	
<u>용화국민학교</u> <u>조동분교장</u>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444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 략	생 략	
<u>오상국민학교</u>	충청북도 권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u>구정국민학교</u> <u>오상분교장</u>	분교장 격하
생 략	생 략	
<u>삼송국민학교</u>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30번지		<u>송면국민학교</u> <u>삼송분교장</u>	분교장 격하
생 략	생 략	
<u>부상국민학교</u>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번지		<u>소수국민학교</u> <u>부상분교장</u>	분교장 격하
생 략	생 략	
<u>삼방국민학교</u>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304번지		<u>추산국민학교</u> <u>삼방분교장</u>	분교장 격하
생 략	생 략	
<u>원남국민학교</u> <u>조촌분교장</u>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 략	생 략	
<u>맹동국민학교</u> <u>맹동분교장</u>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동리 235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신.구 대비표

(국민학교)

현행			변경		
명칭	위치	비고	명칭	위치	비고
생략	생략		
단천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부상리 108번지		단성면	행정구역개편
가산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가산리 290번지		단성면	행정구역개편
생략	생략		
장정국민학교 울산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을산리 185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략	생략		
어상천국민학교 덕문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곡리 171번지		삭	제	분교장 폐지
생략	생략		
금당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번지		어상천국민학교 금당분교장	분교장 격하
생략	생략		

참고자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관련서류

- 충청북도립학교설치 개정 조례중 주요 골자 : 별첨
- 교육법 제82조(설립자)및 교육법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 별첨
- 영동군 군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91.7.5.조례 제1332호) : 별첨
- 단양군 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91.12.31.조례 제1301호) : 별첨
-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및 본교.분교장폐지,분교장 격하안 : 별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주요 골자

1. 학교 신설('92.3.1.)

명 칭	위 치	신 설 사유
청주의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특성화 고교 육성. .2부제수업 메소및 과대학교 분리로 교육여건 개선.
가 경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13-1번지	
산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 택지개발지구내	
을 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을량동 1034번지	
가 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752번지	
충주 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제천 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52번지	

2. 분교 폐지('92.3.1.)

명 칭	위 치	비 고
부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앙성면 지당리 201-5번지	

*폐지사유: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 인력및 교육계정 운영의 효율화도모.

3. 분교장격하('92.3.1)

격하전 명칭	격 하 후 명칭	위 치
수룡국민학교	노은국민학교 수룡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수룡리 554-1번지
단암국민학교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앙성면 단암리 412-1번지
추동국민학교	수산국민학교 추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도전리 175번지
월악국민학교	덕산국민학교 월악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월악리 596번지
학전국민학교	봉양국민학교 학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옥전리 180번지
종암국민학교	용곡국민학교 종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387번지
저산국민학교	강내국민학교 저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번지

격하전 명칭	격하후 명칭	위	치
이식국민학교	내북국민학교 이식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84번지
대동국민학교	안내국민학교 대동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5-1번지
신서국민학교	정성국민학교 신서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정산면 신메리 667-2번지
오상국민학교	구정국민학교 오상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삼송국민학교	송면국민학교 삼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30번지
북상국민학교	소수국민학교 북상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번지
삼방국민학교	추산국민학교 삼방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304번지
금당국민학교	어상천국민학교 금당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번지

*격하사유: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 인력및 교육계정 운영의 효율화도모.

4. 분교장 폐지('92.3.1)

분교장 명칭	위	치	폐지 사유
북일국민학교 청에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원통리 138번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수안보국민학교 미륵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미륵리 194번지	교육의 내실화도모.
동량국민학교 지동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하천리 13-3번지	인력및 교육계정 운영의 효율화.
산척국민학교 명서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명서리 493-7	
두학국민학교 자작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 256번지	
금성국민학교 중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금성면 포전리 산 27번지	
수산국민학교 단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고명리 299-1번지	
용곡국민학교 가양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332번지	
문의국민학교 구룡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구룡리 19-1번지	
문의국민학교 회서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81-1번지	
회남국민학교 분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71번지	

별칭명	명칭	위치	면적	폐지 사유
보인국민회	보인국민회	양양부내 보인리	보인면 양부리 95-3면적	
삼포국민회	삼포국민회	양양부내 삼포리	삼포면 삼포리 118-1면적	
익수국민회	익수국민회	양양부내 익수리	익수면 익수리 353면적	
양강국민회	양강국민회	양양부내 양강리	양강면 양강리 485-1면적	
양북국민회	양북국민회	양양부내 양북리	양북면 양북리 444면적	
관마국민회	관마국민회	양양부내 관마리	관마면 관마리 549면적	
염매국민회	염매국민회	양양부내 염매리	염매면 염매리 235면적	
양양국민회	양양국민회	양양부내 양양리	양양면 양양리 155면적	
오상국민회	오상국민회	양양부내 오상리	오상면 오상리 73면적	

5. 향민회 폐지 명칭 변경 명칭 ('92.3.1)

폐지명	명칭	위치	면적
양양향민회	양양향민회	양양부내 관마리	관마면 관마리 11-8면적
관마향민회	관마향민회	양양부내 관마리	관마면 관마리 103면적

* 폐지 사유: 관마향민회 양양향민회

6. 위키이전 확립 ('92.3.1.)

명칭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부내향민회	이전전	양양부내 부내리	부내면 부내리 247면적	부내리내 양양향민회
	이전후	360면적	

* 이전 사유: 부내리내 양양향민회의 정산확립 후 양양향민회로 통합

7. 행정구역 변경

명 칭	구 분	위 치	개 편 일 시
추 풍 령 국 민 학 교	개 편 전 개 편 후	충청북도 영동군 황금면 추풍령리 375-1번지 추풍령면.....	'91.7.1.
추 풍 령 국 민 학 교 신안분교교장	개 편 전 개 편 후	충청북도 영동군 황금면 신안리 63번지 추풍령면.....	'91.7.1.
단 성 중 학 교	개 편 전 개 편 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방리 79-1번지 단성면.....	'92.1.1.
단 천 국 민 학 교	개 편 전 개 편 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북상리 108번지 단성면.....	'92.1.1.
가 산 국 민 학 교	개 편 전 개 편 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가산리 290번지 단성면.....	'92.1.1.

8. 지번부여

명 칭	구 분	위 치	사 유
봉 정 국 민 학 교	부 여 전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제2택지개발지구 제4블럭	. 택지개발 지구 지적 정리로 지번 부여
	부 여 후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2141번지	

0 교육법 제82조(설립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

0 교육법 제85조(학교의 설립, 폐지) :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비, 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교육감의, 공, 사립의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 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0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계획안 및 본교폐지, 분교장폐지, 분교장격하 기준

1. 학교신설 계획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과 도시화의 인구 집중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급격한 교육 인구의 이동으로 시지역의 2부제수업을 해소하고 과대학교 분리를 위하여 '91국.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국민학교는 청주3개교, 충주1개교, 제천1개교, 중학교는 청주1개교 신설 요인 발생.

2. 소규모학교 통, 폐합 기준

가. 본교폐지: 학생수 180명 이하, 편성학급 6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4km 이내에 인근교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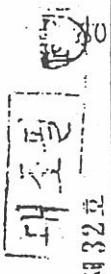
나. 분교장폐지: 학생수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인근에 2개교 이상 있는 경우.

다. 분교장격하: 학생수 100명 이하의 본교.

*통, 폐합 기준 적용의 탄력적 운영

- 본교 통, 폐합 기준의 4km 이내의 거리 개념을 통학편의 제공시에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통학가능 지역까지 확대 적용.

- 학급수 및 학생수 등 학교 규모가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통, 폐합이 가능한 학교는 이 시책에 의거 추진.



영동군의회에서 의결된 영동군민명칭관리규약에관한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91년 7월 5일
영동군수 김광기 ㉔

영동군 조례 제 1332 호
영동군면명칭관리규약에관한조례

영동군민명칭관리규약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규정관의 승인용 특한(내무부 기기 02121-5451
'91. 6. 7) 영동군 향급민의 명칭은 "추풍령면"으로 변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개정) ㉔ 시행 또는 영동군 조례의 제정과 각
조의 내용중 "향급민"을 "추풍령면"으로 한다.
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의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민 명 칭 을 변경할 조례

- 영동군리의 명칭과 구역의 관할조례
- 영동군이장정원조례
- 영동군안설치조례
-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치요상판에관한조례
- 영동군청사위원회에관한조례
- 영동군보건의료조례
- 영동군보건의료소원칙조례
- 영동군세조례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한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단 양 군 수 기니깁 2

1991년 12월 31일

단양군 조례 제 130/호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제 1 조 (면설치) ① 단양군 단성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면명	면외명칭	관할구역
단양군	단성면	중천 단양군 단양읍 구단양출장소 지역일원 복상리, 북아리, 상방리, 중방리, 아방리, 외중방리, 장외리, 두암리, 고평리, 양당리, 법천리, 외산리, 가산리, 대잠리.

② 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중에서 복상리, 북아리, 상방리, 중방리, 아방리, 외중방리, 장외리, 두암리, 고평리, 양당리, 법천리, 외산리, 가산리, 대잠리를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질문요지서

성명	권역종	소속	
질문대상		소요시간	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2 폐교 및 향후 연차별 폐교 대상교 현황과 그 대비책은 ? 2. 일선교사의 나사 풀린 풍조(무소신)의 근본원인과 그 해결책은 ? 3. 중학의무교육의 근단위지역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 그 해결책은 ? 4. 여·중고생 가출 현황과 그 원인 및 대책은 ? 5. 도·시·군 및 학교계획수립 과정과 주민의 참여 방법은 ? 6. 교육감 - 규칙 제정 교육위 - 조례 제정 } 기능상의 구분 한계는 ? 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2조 ②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들 수 있다』에 대한 유권해석은 ? 8. 중·고생 진로교육의 현황과 그 대책은 ? 9. 교원 인사이동 발령 - 종업식전 시행 가능 여부는 ? 10. 유치원 입학년령 3세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 (프로그램, 시설, 교사 등) 			

서 면 답 변 서 목 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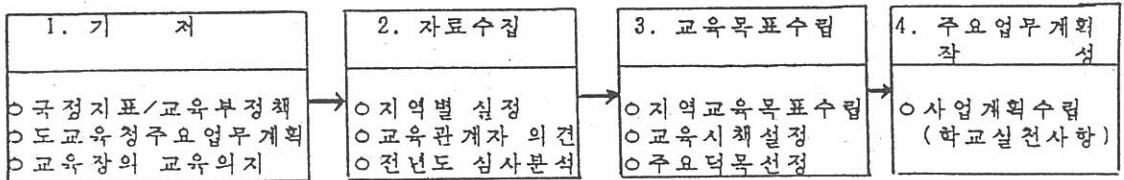
질문위원명	질 문 내 용	담당부서	비고
권 혁 풍	1. 도·시·군 및 학교운영계획 수립과정과 주민의 참여방법은?	기획감사 담당관실 초등장학과	
	2. 교 육 감 - 규칙제정] 기능상의 구분한계는? 교육위원회 - 조례제정	행정관리 담당관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②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들 수 있다』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정관리 담당관실	
	4. 유치원 입학연령 3세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프로그램, 시설, 교사등)	초등장학과	
	5. 일선교사의 무소신의 근본원인과 그해결책은 ?	초등교직과	
	6. 교원 인사이동 발령 - 종업식전 시행 가능여부는?	초등교직과	
	7. 여중·고생 가출 현황과 그 원인 및 대책은?	중등장학과	
	8. 중·고생 진로교육의 현황과 그 대책은?	중등장학과	
	9. '82 퇴교 및 향후 연차별 퇴교대상교 현황과 그 대비책은?	행 정 과	
	10. 중학의무교육의 군단위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 그 해결책은?	행 정 과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풍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도·시·군 및 학교운영계획 수립과정과 주민의 참여방법은?

1. 수립과정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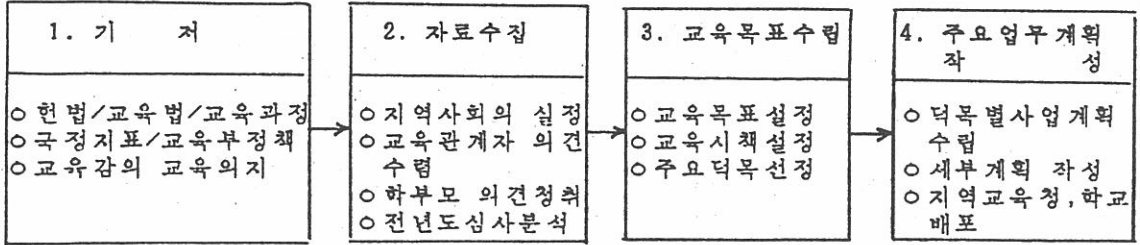


- 가. 상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의지 및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하여
- 나. 지역별특색 및 당면한 교육과제를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학부모회/각종모임/상담등을 통하여 수립하고,
- 다. 지역교육에 적절한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교육시책을 설정한 후, 협의에 의한 주요업무계획을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학교에 인쇄물로 제작 배포함.

2. 주민참여 방법

- 가. 현재까지는 학부모회, 각종모임등의 일부에서 의견을 수립해 왔으나,
- 나. 주민의 참여방법과 기회가 적극적이지 못한점을 유의하여 앞으로는 주민의 의사수렴에 증실할 수 있도록 힘쓸것 임.

1. 수립과정 (도)



- 가. 교육관계법 (헌법, 교육법, 교육과정)과 교육정책부서의 교육지향 (국정지표, 교육정책) 및 교육감의 교육의지를 근거로 하여
- 나. 우리도의 지역실정과 교육관계인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교육행정간담회의 형식을 빌어 교육계획에 반영사항을 수렴하고,
- 다. 우리도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 후 각과 및 기획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주요업무계획 시안을 작성하며,
- 라. 주요업무 덕목에 따라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수합, 정리후 실·국별 업무협의회의를 하고 최선의 수정·보완을 한 후, 결재과정을 거쳐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인쇄 배포함.

2. 주민참여 방법

- 가. 현재까지의 주민참여는 간접적인 방법 (교육행정간담회, 시군주요업무보고회 등)였으나,
- 나. 앞으로 교육자치정신에 맞게 교육위원 및 주민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음.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품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학교교육계획 수립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1. 학교교육 계획수립

- 교육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도 및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에 근거를 두고
- 매학년도 각학교별 지역사회 및 학생 실태를 조사,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하여
-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목표에 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 및 실태조사 분석 자료, 학교장의 교육의지 등을 관련지어, 학교자체의 교육목표를 설정 하고
- 학교장을 중심으로 전교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목표관리 체제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함.

2. 학교교육 계획수립에 주민참여 방법

- 매 학년도마다 학교별 학부모회 및 어머니회, 동창회, 지역의회 등을 통한 참여
- 학교의 주요행사 (졸업식, 체육회, 학습발표회 등)에 유관기관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원
- 학교의 교육홍보 (학교신문, 학습발표물 등)에 따른 각계의 의견 제공
- 구체적인 교육 상담활동을 통한 참여
- 기타 학교의 교육에 관한 설문지 등을 통한 의견 제시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혁풍	소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조례와 규칙의 기능상의 구분 한계는?

개념과 근거법령, 한계, 규정범위를 비교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	규
개 념 및 의 의	<p>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p> <p>② 교육·학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경제적부담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확보하는데 있음</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p> <p>② 교육규칙 - 교육감이 법령 및 조례의 범위안에서 교육·학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정립하는 자치법규</p>
근 거	<p>○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p> <p>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p>	<p>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 (교육규칙의 제정)</p>
한 계	<p>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가능</p>	<p>가.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p>

<p>한계</p>	<p>나. 자치사무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고 자기구역안의 주민에 한해서만 효력 있음.</p> <p>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함.</p>	<p>나.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제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p> <p>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함.</p>
<p>규정 범위</p>	<p>가. 현재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에 당연히 조례로 정할것을 위임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조례제정 가능함.</p> <p>나. <u>일반적인 조례규정 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 · 지역주민의 경제적.재정적 부담.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징수등)에 관한사항 · 주민의 일상생활 및 공공복리에 관한사항 · 공공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 ·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의물 필요하는 성격에 관한사항 · 기타 법령에 조례로 정할것을 위임한 사항 	<p>가. 규칙음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규칙』과 당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해 발해지는 『직권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음.</p> <p>나. <u>일반적인 규칙규정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 집행절차에 관한사항 · 기관내부 사항에 관련된 규정 (인적관리규칙, 조직관리규칙, 공공시설이용규칙등) · 사무집행절차 또는 행정통계, 제량해석 등에 관한사항 ·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행적용하는 교육부규칙이나 지침사항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관장사무중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없이 직권으로 정할수 있는 성격에 관한사항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품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 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에 대한 유권해석은?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42조는 지방교육자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동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보조기관(부교육감, 국·과장, 담당관등)과 동법 제41조 제1항의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 후생복지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하급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치는 당해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을 두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총무처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451호, 91.8.16공포)의 재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첨 : 교육부교행 25002-432, 91.11.30. 질의회신참조)
3.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교육자치제의 이념상 지방교육자치기관에 국가직공무원을 배치하는것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범위내에서 국가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대통령령이 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교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전부 국가직이기때문에 지방실정에 적합한 교육공무원 인적관리(배치, 임용, 정원등)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타지역도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적지않은 어려움과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교육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 육 부

모사전송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교육부 / 전화 (720-3316)

/ 전송 (736-340)


문서번호 교협 25002-432

시행일자 1981.11.30 (년)

(검유)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선급	부교육감		지		
접	일지	91.11.30	시	결	동등교육부장 사회교육부장 일반교육부장
	시간	11:46			
수	번호	4106	재	공	동등교육부장 사회교육부장 일반교육부장
	처리과	사회교육정책과			
담당자			담		

제과 집 의 회 신

사회 01210-907('91.11.26)호로 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집의요지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매치는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설치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기에 이루어져도 되는지 여부 ?

나. 법 제42조 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풀수 있다"에서 '대통령령'은 어떤 법령의 관련조항을 말하는지 ?

2. 회신내용

가. 집의 "가"에 대하여

○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설치승인은 그 설치의 필요성과 소요예산(국고, 자체등), 타 시·도와의 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설치 여부와 타당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이며

○ 신설되는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만으로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시기등을 고려하여 기관설치 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귀 집의에서처럼 지방공무원외에 국가공무원(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정원 또는 기구 등 두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의하여 총무서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및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직제표 개정해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상 기관설치 승인과 별도로 조치됨.

25002-402

나. 질의 하나에 대하여

○ 법 제42조 제1항중 '대통령령'이라 함은 지방교육청장기관 칙령(대통령령
제155호, '8. 18)의 정관만을 제정함을 말함. "끝"

국
무
부
장

국무총장 직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1991.8.16)
(대통령령제1345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교육감)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①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의 교육청

제4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의 교육청에 총무과·초등교육국·중등교육국·사회교육체육국(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한한다) 및 관리국을 둔다.

②교육감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부교육감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5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제6조 (기획감사담당관) ①기획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중립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기타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되는 사항

제7조 (행정관리담당관) ①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 및 행정관리 개선
2.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확인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조례안의 작성 및 규칙의 제정,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5. 교육행정의 전산 및 통계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행사·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인사·공무원(교원을 제외한다)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초등교육국) ①초등교육국에 초등장학과 및 초등교직과를 둔다.

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장학과는 의무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장학지도·학예행사 및 학생의 교외생활 지도
3. 시청각교육·공작 및 학급문교관리의 지도
4. 유치원 및 특수교육의 지도·감독
5. 기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초등교직과는 유치원·국민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 복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중등교육국) ①중등교육국에 중등장학과·중등교직과·과학기술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부산직할시교육청에 한한다)를 둔다.

②국장·중등장학과장·중등교직과장 및 과학기술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 체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중등장학과는 중등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장학지도·학예행사 및 학생의 교외생활 지도

3. 시청각교육에 관한 사항
4. 장학생선발·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중등교직과는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인사·교육·후생복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⑤과학기술과는 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학사 및 장학지도
3. 과학 및 실업계학교의 장학금 관리
4.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
5. 기타 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⑥사회교육체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지도·감독
2.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 운영의 지도·감독
3. 소속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4.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5.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6.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7. 체육교과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학교운영의 지도·감독
8. 학교체육·시민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9. 학교의 보건위생·급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회교육체육국) ①사회교육체육국에 사회교육과·학교체육과 및 학교보건과를 둔다.

②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학교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보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

③사회교육과는 제10조제 6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학교체육과는 제10조제 6 항제 6 호 내지 제 8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교보건과는 제10조제 6 항제 9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행정과·재무과·시설과 및 건축과(서울특별시 교육

청에 한한다)를 둔다.

②국장은 부이사관으로, 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건축과장은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3. 의무취학 및 학구제 운영
4. 외자관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각급학교 육성회 운영의 지도·감독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3. 세입·세출의 현금의 출납 및 보관
4. 기채 및 상환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⑤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설과는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 및 시설 조성
3. 교육시설의 기본설계
4. 교육기자재의 관리
5. 관급 자재의 수급관리
6. 각급학교와 소속기관 시설사업의 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7. 각종 보수공사의 설계·지도·감독 및 검사
8.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⑥건축과는 제 5항제 6호 내지 제 8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3 장 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

제13조 (하부조직) ①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직할시·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에 총무과·초등교육국·중등교육국 및 관리국을 둔다.

②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부교육감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14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제15조 (기획감사담당관) ①기획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 제 6 조제 2 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제16조 (행정관리담당관) ①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행정관리담당관은 제 7 조제 2 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제17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제 8 조제 2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초등교육국) ①초등교육국에 초등장학과 및 초등교직과를 둔다.

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장학과는 제 9 조제 3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초등교직과는 제 9 조제 4 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중등교육국) ①중등교육국에 중등장학과·중등교직과·과학기술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를 둔다.

②국장·중등장학과장·중등교직과장 및 과학기술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중등장학과는 제10조제 3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중등교직과는 제10조제 4 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과학기술과는 제10조제 5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사회교육체육과는 제10조제 6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행정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 ②국장은 서기관으로, 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기계과·진기계과·토목과 또는 건축과로 보한다.
- ③행정과는 제12조제 3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④재무과는 제12조제 4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⑤시설과는 제12조제 5 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4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

제21조 (교육장의 직무) 교육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하급교육청”이라 한다)의 업무분장하기 위하여 별표 3의 하급교육청에 학무국 및 관리국을, 별표 4의 하급교육청에 학무과·사회교육체육과·관리과 및 재무과를, 기타의 하급교육청에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학무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를 둔다.

③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④학부국장·학무과장·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과·지방진기계과·지방토목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정원의 배정)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정원 배정은 교육부장관이, 시·도의 하부조직별 정원배정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행한다.

제24조 (위임규정) 과의 하부조직과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교육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감 정원 15인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 1 조중 "각급학교에"를 "국립의 각급학교에"로 한다.

제 2 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

(별 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 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 "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5"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 1" 및 "원감 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11. 공립중학교"·"12. 공립특수학교"·"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

②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2 항중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를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

1. 총괄표	
총 계	3,976
교육공무원 계	3,855
장학관	691
교육연구관	160
장학사	2,385
교육연구사	619
일반직 계	121
관리관 또는 장학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14
부이사관	2
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장학관	1
시설기정	2
행정사무관	52
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13
건축기좌	12
기계기좌·전기기좌·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	1
2. 시·도의 교육행정기관	
총 계	1,891
교육공무원 계	1,770
장학관	276
교육연구관	160
장학사	715
교육연구사	619
일반직 계	121
관리관 또는 장학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14
부이사관	2
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장학관	1
시설기정	2
행정사무관	52
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13
건축기좌	12

기계기과·선기기과·토목기과 또는 건축기과	1
3.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	
총 계	2,085
교육공무원 계	2,085
장학관	415
장학사	1,670

(별표 2)

공립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

1. 총관표	
총 계	253,146
교육공무원 계	253,146
2. 고등학교	
총 계	42,776
교육공무원 계	42,776
교 장	833
교 감	924
교 사	41,019
3. 중학교	
총 계	68,849
교육공무원 계	68,849
교 장	1,798
교 감	1,909
교 사	65,142
4. 특수학교	
총 계	1,123
교육공무원 계	1,123
고등학교과정	
교 장	5
교 감	6
교 사	303
중학교과정	
교 장	2
교 감	8
교 사	307
국민학교과정	
교 장	24

교 감	27
교 사	392
유치원과정	
교 사	49
5. 국민학교	
총 계	136,903
교육공무원 계	136,903
교 장	6,270
교 감	7,071
교 사	123,562
6. 유치원	
총 계	3,495
교육공무원 계	3,495
원 장	1
원 감	30
교 사	3,464

[별표 3]

학부과 및 관리국유 두는 하급교육청(제22조제 1 항관련)

시·도별	하 급 교 육 청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관할 전교육청
경 기 도	수원교육청·성남교육청·안양교육청·부천교육청
전 라 북 도	전주교육청
경 상 남 도	마산교육청·울산교육청

[별표 4]

학무과·사회교육체육과·관리과 및 제무과를 두는 하급교육청(제22조제 1 항관련)

시·도별	하 급 교 육 청
경 기 도	광명교육청·안산교육청·남양주교육청
충 청 북 도	청주교육청
충 청 남 도	천안교육청
전 라 북 도	이리교육청
경 상 북 도	보령교육청
경 상 남 도	창원교육청·진주교육청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품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유치원 입학연령 3세이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 현 황

'91 취원 현황 및 '92 취원 계획

연 도 별	학 급 수	원 아 수				취 원 율
		3 세	4 세	5 세	계	
'91 현황	715		7,508	10,806	18,314	56.1%
'92 계획	726	1,976	7,414	11,286	20,676	64.4%

2. 문 제 점

- 3세아를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미비
- 원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른 개인차와 학급당 원아 증가로 인하여 교사의 지도부담 과중
- 3세아의 신체 조건에 따른 시설, 설비 종류 및 규격의 부적합

3. 대 책

- 연령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행
(연간, 월간, 주간, 일일교육 프로그램 작성)
- 시범반 운영으로 교육방법 및 교재개발 보급
- 3세아 취원을 위한 시설, 설비여건 개선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품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일선교사의 무소신 풍조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은?

1. 근본원인

- 일선 교사들의 개방적인 사고와 개인주의 팽배
- 근무환경의 열악 (상대적 환경)
- 개인적 안일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회 풍조의 영향

2. 해결책

- 인화중심의 교육행정 추진
- 기강확립을 위한 연수 (대화·참여 기회 확대)
- 교육계정의 교단지원 우선집행 및 공개
-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사무기기 확보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품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p>질문요지 : 교원 인사이동 발령 - 종업식전 시행가능 여부는?</p> <p>1992년 2월 20일 발령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나 교육부에 제청한 발령이 지연될 경우 교감 이하만 우선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p>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풍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여중·고생 가출현황과 그 원인 및 대책

1. 가출 현황
 - 중학생 40명
 - 고등학생 35명 계 75명
2. 가출 원인
 - 부모의 무관심과 일방적 요구에서 오는 강박감
 - 결혼 가정 증가로 가정에 대한 불만 고조
 - 불량교우 관계에서 오는 유혹
 - 사춘기의 정서 불안
3. 대 책
 - 중·고등학교의 바른 가치관 정립 교육
 - 진로상담실 운영의 내실
 - 결연지도로 성취의욕 고취
 - 계획적 상담활동
 - 사랑의 대화시간 운영
 - 학부모 교실 운영을 통한 가정교육
 - 따뜻한 가정환경 조성
 - 부모, 자녀간 사랑의 대화
 - 자녀의 바른 이해
 - 학생보호를 위한 등·하교지도 강화
 - 바른 성교육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혁풍	소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중·고생 진로교육의 현황과 그 대책

1. 현 황

가. 교육청 - 진로교육 지원

-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자료 개발 보급
 - 책자 15종 43,100부
 - 팜프렛 5종 64,100매
- 선교(選校)·선과(選科), 취업을 위한 진로상담실 개설 운영
 - 지역상담실 5실
 - 협력학교 상담실 18실
 -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259명
- 진로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 2개교 지정 운영 (중 1교, 고 1교)

나. 학교 -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위하여

- 학생의 자기 이해력 증진
 - 자기 자신의 능력, 적성, 가정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학과 담임을 통한 올바른 교육과 새로운 정보 수집
- 학부형의 진로 의식 전환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자녀의 바른 이해
 - 학생의 능력, 적성, 가정형편, 잠재성을 고려한 자녀의 진로 조언

○ 학교에서 진로교육

- 상담활동을 통한 학생 이해
- 교과지도를 통한 일과 직업의 세계 이해
- 학부모와 대화를 통한 학생 이해력 증진
- 진로의 낱을 운영하여 직업의 이해와 진로선택의 이해증진
- 진로지도 자료의 적극 활용 (참고 : 교육부 진로교육자료, 진로교육부 개발 보급자료)

2. 대 책

- 가. 지속적인 자료개발 보급
- 나. 진로상담실 확대 운영
- 다. 연구학교 연구내용 보급 일반화
- 라. 지속적인 학교 진로교육 지도 조언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풍	소 속	
질문 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92 폐교 및 향후 연차별 폐교대상교 현황과 그 대비책은?

- 가. '92년도 폐교현황 : 별첨
- 나. 연차별 ('93/'94년) 폐교예정 대상교 현황 : 별첨
- 다. 폐지대상교의 지원대책
 - 학생수 감안 (유치원, 중·고생수 포함) 통학용 버스 지원
 - 폐지학교 현황

학교수	학급수	교 직 원 수			수 송 대 책					비고
		교원	기능직	계	기 차량이용	중 형	대 형	통학비 지원	소 계	
21	49	57	30	87	4	10	3	2	19	

※ '92년까지 통학용버스 35대 지원

- 라. 폐지학교 활용계획
 - 학생야영장 / 수련장 / 교직원휴양소 등으로 교육목적에 활용
 - 지역주민 복지증진 / 문화센터 역할등으로 활용
 - 민간인에게는 매각 금지

년도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폐지 년도	학 교 명	소 계 지	교실수	부 지 (㎡)	활용 계획	비 고
'92	북성국민학교	중원군 양성면 지당리 201-5				
	북일국민학교 정애원분교장	정원군 북일면 원봉리 138	2			
	수안국민학교 미작분교장	중원군 상모면 미륙리 194	3	2,078	교실 위 류양	수
	동양국민학교 지동분교장	중원군 동양면 하진리 13-3	3	10,691	하 야	영 장
	산척국민학교 명서분교장	중원군 산척면 명서리 493-7	8	10,296	하 야	생 영 장
	두하국민학교 자작분교장	제천시 자작동 256	7	9,770		
	금성국민학교 중전분교장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산27	3	9,322		
	수산국민학교 단산분교장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299-1	3	7,655		
	문의국민학교 희서분교장	정원군 문의면 마동리 81-1	6	6,751		
	문의국민학교 구룡분교장	정원군 문의면 구룡리 19-1	9	11,495		
	유곡국민학교 가양분교장	정원군 미원면 가양리 332	7	8,830		
	희남국민학교 분저분교장	보은군 희남면 분저리 72	7	9,461		
	산외국민학교 산대분교장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 118-1	8	13,987		
	희인국민학교 희황분교장	보은군 희북면 용곡리 99	10	9,107		
	이수국민학교 심원분교장	영동군 영동읍 심원리 353	7	5,226		
	양강국민학교 산마분교장	영동군 양강면 산마리 485-1	7	7,715		
	용하국민학교 조동분교장	영동군 용하면 조동리 444	7	6,39		

해지 년도	학 교 명	소 계 지	교실수	부 지 (㎡)	원용계획	비 고
'92	맹동국민학교 몽동분교장	음성군 맹동면 몽동리 235	6	7,150		
	월남국민학교 4 조촌분교장	음성군 월남면 조촌리 549	8	11,881	학 생 야 영	광
	장정국민학교 읍산분교장	단양군 장정면 읍산리 180	3	9,785		
	이상진국민학교 덕문곡분교장	단양군 이상진면 덕문곡리 171	9	28,840		
	소계 21교					
'93	상촌국민학교 삼상분교장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360-4	14	12,547		
	우산국민학교 침미분교장	옥천군 동이면 정마리 872-1	8	7,830	교 지 원 용 양 소	
	문백국민학교 읍탄분교장	진천군 문백면 읍탄리 338-2	2	7,448		
	연풍국민학교 신풍분교장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37	7	11,812		
	이흥국민학교 대추분교장	괴산군 정진면 추영리 196-1	7	12,798		
	송하국민학교 송한분교장	제천군 송하면 송한리 2구 543	9.5	9,754		
	가곡국민학교 향산분교장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347-4	5	4,434		
	이상진국민학교 연곡분교장	단양군 이상진면 연곡리 631	7	11,457		
	소계 8교					
'94	영동국민학교 화신분교장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228-3	6.5	3,507		
	정풍국민학교 양평분교장	제천군 정풍면 도곡리 산21-7	3	9,342		
	벌파국민학교 유암분교장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	5	6,032		

폐지 년도	학 교 명	소 계 지	교실수	부 지 (㎡)	활용계획	비 고
'94	단양국민학교 여천분교장 대강국민학교 황정분교장 소계 5교	단양군 가락면 여천리 241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193	7 8	13,770 7,314		
계 34교						

답 변 서

질문 위원명	권 혁 풍	소 속	
질 문 대 상	충청북도교육청	소요시간	분

질문요지 : 중학교 의무교육의 군단위 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그 해결책은

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방안 (군지역이하)

- 현 행 : 도서·벽지 및 특수학교
- '92학년도 : 1학년
- '93학년도 : 2학년
- '94학년도 : 3학년

※ '94년부터 군지역이하는 전원 의무교육 실시

- 수혜범위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 시행시기 : '92. 3. 1.

나. 문제점 및 해결책

군단위 지역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른 계원은 '92 예산에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

'92 의 두 교 육 대 상 현 황

시·군·읍	대상학교수				'92. 1학년 학생수				수 입 금					수 입 료				
	국	공	사	계	시	군·읍	면	포지	계	입학금	수			료				
											시	군·읍	면	포지	계			
충주시		6		6	34				34	231,200							9,465,600	
제천시		1		1	7				7	47,600							1,948,800	
계		7		7	41				41	278,800							11,414,400	
청원군	1	8		9				1,792	1,792								286,003,200	
보은군		7		7		513		470	983			129,276,000					75,012,000	
유천군		6		6		805		508	1,313			202,860,000					81,076,800	
영동군		5	4	9		545		713	1,258			137,340,000					113,794,800	
진천군		6		6		537		457	994			135,324,000					72,937,200	
괴산군		11	2	13		1,056		573	1,629			266,112,000					91,450,800	
음성군		6	3	9		782		538	1,320			197,064,000					85,864,800	
증평군		8	1	9				1,002	1,002								159,919,200	
제천군		6	1	7				590	590	28							94,164,000	
단양군		6(1)		6(1)		681		73	754	212							171,612,000	
소 계	1	69 (1)	11	81 (1)		4,919		6,716	11,875	240							2,324,501,600	
합 계	1	76 (1)	11	88 (1)	41	4,919		6,716	11,916	278,800		11,414,400	1,239,588,000			1,071,873,500	23,040,000	2,345,916,000

※ 입학금 : 6,800

연간수업료 : 시 - 278,400원, 군·읍 - 252,600원,

 면 - 159,600원, 포지 - 96,000원

